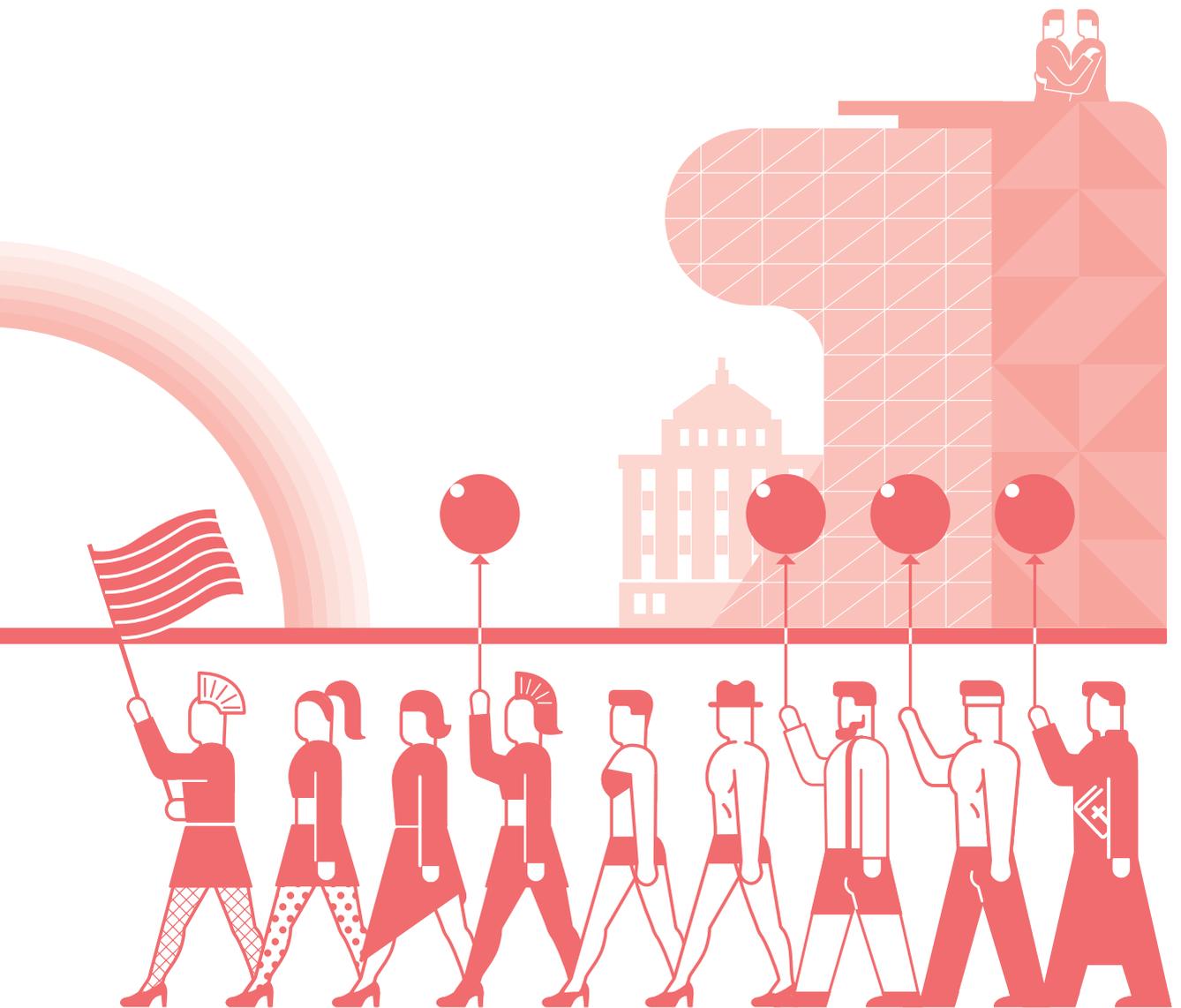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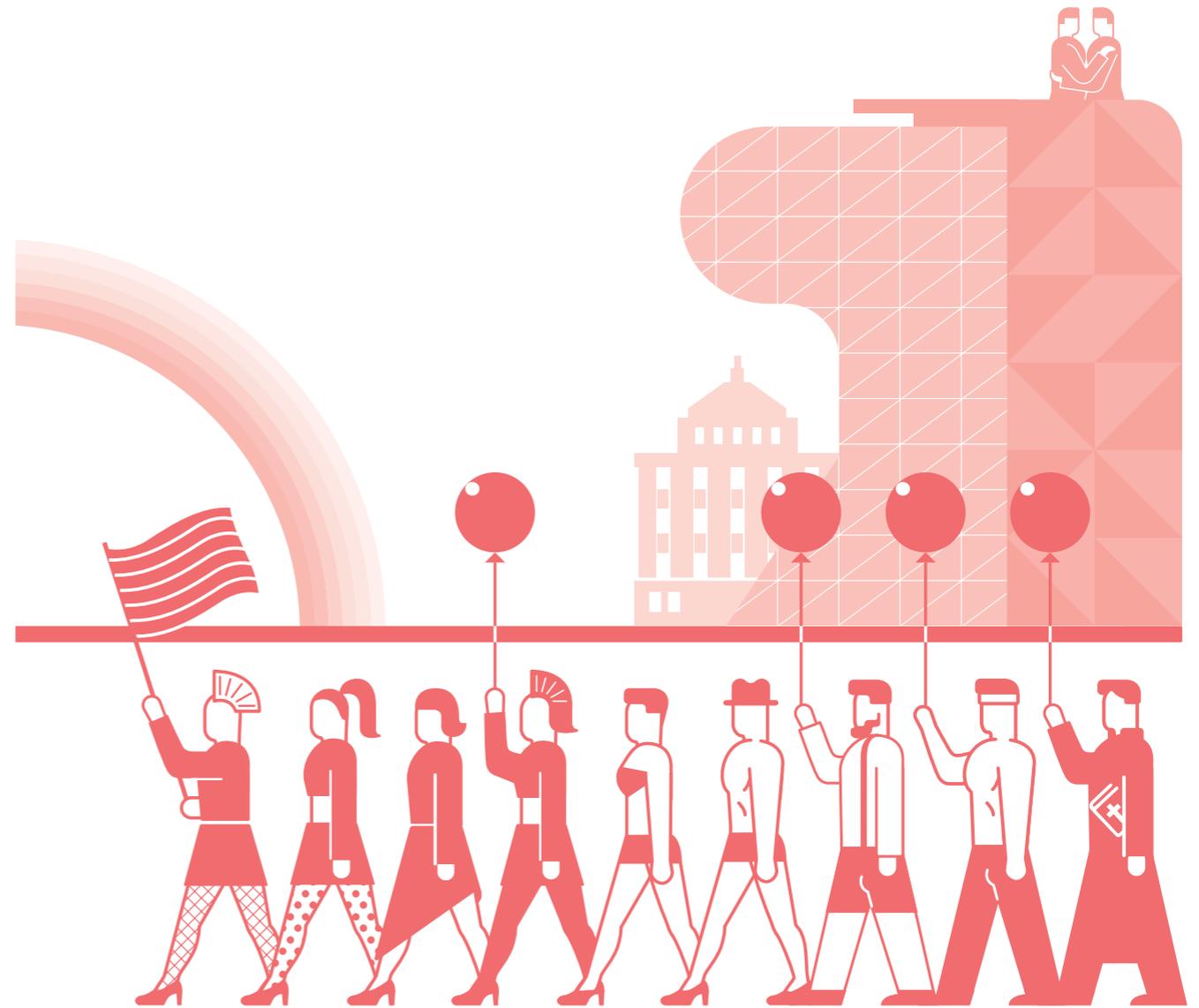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2011년 8월	창립 (회장: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1년 9월 30일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 (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2년 6월 1일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다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2012년 10월 27일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13년 3월 15일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2013년 7월 31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8월 9일	논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2013년 9월 14일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11월 19일	논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014년 3월 10일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2014년 9월 30일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주최 (기사: "정의가 행해지기 위해 또한 보여져야 한다",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
2014년 12월 23일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공동 발표)
2014년 9~12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주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2015년 1월 6일	비릿 문타본과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5년 2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주최 (진선미 의원실 등 공동주최)
2015년 3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현지 대응, 네트워크 활동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참여)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5년 9월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은폐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에 진정
2015년 10월	국제LGBTI연합 가입, 아시아지부(ILGA-Asia) 컨퍼런스 참여 및 이사회 선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1월 27일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공동주최
2016년 2월	창비학당 1기 '성 소수자, 한국 사회를 질문하다' 출강
2016년 3월	회장 이·취임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6년 5월 31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포용적 교육과 지속가능개발> 워크숍 참여 (정현희 연구원)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sogilaw.org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annual.sogilaw.org
메일	sogilip.ks@gmail.com
전화	0505.300.0517
SNS	www.facebook.com/sogilaw.org

2016년 6월 22일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2016년 8월 20일	제2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7년 2월 16일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기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임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2013.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나영정·정현희,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2015
조사연구	2012년 6월~2014년 5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5.18)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5.17-국문판, 2015.6.28-영문판) - 아름다운재단 지원 연간보고서 홈페이지 오픈(2015.6.28) annual.sogilaw.org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5.17-국문판, 2016.6.11-영문판) - 49통일평화재단 지원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국문/영문 합본 2017. 5. 17)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인권재단사람 지원) 2017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2기(인권도서관春花)
SOGI콜로키움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6.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8.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4회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5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 의미와 과제 (2016. 11. 19.)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외 다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LGBTI연합(ILGA -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가입단체

발간사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펴내며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규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규범이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유해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으며,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운동, 2007년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 2010년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변론활동,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원안통과를 위한 서울시의원회관 점거농성, 2014년 서울시 인권현장 폐기에 저항하는 서울시청 점거농성 등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와 사건, 운동은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2014년부터 펴내고 있는 이 『한국 LGBTI 인권현황』은 이러한 성소수자에 관한 한국의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회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였고, 현행 성소수자 관련 법제 역시 빠짐없이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매해 국내외 여러 단행본과 학술논문, 발표문 등에서 인용한 것을 확인하면서, 그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인권현안에 관한 내용을 번역·배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작년부터 영문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이 역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합니다.

이 보고서를 펴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까다로운 발간 실무를 담당한 김현경 상임연구원, 영문판 편집인을 흔쾌히 맡아준 김지혜 교수, 충실하고 정확한 영문 번역을 해주신 홍승기 활동가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필에 참여한 류민희, 박한희,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연구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매년 읽기 쉽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이경민 디자이너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년 보고서는 수많은 소액후원자님들의 도움 없이는 발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올해 우리 연구회에 큰 도움을 주신 그레이스 강 후원자님께도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목차

I.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11
----------------------------	----

II.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15
---------------------	----

III.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25
2. 차별철폐와 평등	27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31
4. 고용	34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35
6. 교육/청소년	38
7. 군대	43
8. 경찰	46
9. 구금/수용시설/난민	47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48
11. 혐오표현	50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52
13. 성별변경	54
14. 가족구성권	56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57
16. 보건/의료	58
17. 사회보장	64
18. 여론/미디어	66
19. 조사/연구	71
20. 국제인권메커니즘	74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77
---------------------------	----

부록	89
1. 2016년 주요 판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91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93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97



2016년 성소수자 인권상황은 국가의 혐오와 방치, 반성소수자 세력의 선동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년 이내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직후의 현실이었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내놓은 최종 권고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와 상반되게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에서 각각 결정을 내리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하여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수립은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계속해서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 단체의 선동에 가로막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사건들을 기각하고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인권위원의 반성소수자 활동을 두둔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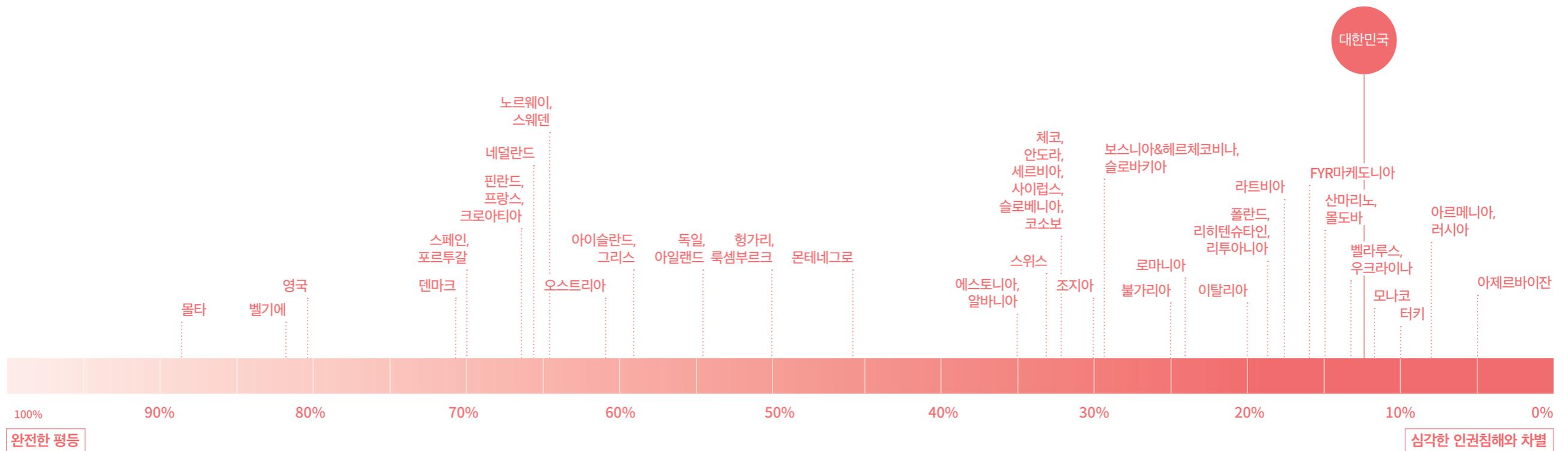
한편,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고, 심지어 반이슬람과 더불어 반동성애를 기치로 내건 기독교당이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며 2%가 넘는 정당득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고, 미디어의 성소수자 재현에 대한 검열이 이어졌으며,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대관을 거부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들 역시 불거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퀴어 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혐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운동이 목표치를 넘어 성사되었다.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어갔고, 트랜스젠더의 병역과 관련한 소송들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6」의 틀과 「ILGA-Europe Rainbow Map(<http://rainbow-europe.org>)」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¹

한국의 2016년 지수는 12.32%로 2015년 13.0%보다 0.68% 포인트 감소했다. 실질적인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지수계산에 있어 일부 평가항목과 가중치 변경에 따른 결과이다. 2015년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3위를 한 마케도니아(13%)와 유사한 지수를 유지했는데, 2016년에는 44위를 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13%)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상대적 측면에서도 하락했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모나코(11%), 터키(9%), 아르메니아(7%), 러시아(7%),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88%), 벨기에(82%), 영국(81%), 덴마크(71%), 스페인(70%) 등이 꼽혔다.



평등과 차별금지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헌법(성적지향) [constitution(sexual orientation)]	
	고용(성적지향) [employment(sexual orientation)]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goods & services(sexual orientation)]	
	교육(성적지향) ² [education(sexual orientation)]	◎ 1.25
	보건/의료(성적지향) [health(sexual orientation)]	
	평등기구(성적지향) ³ [equality body mandate(sexual orientation)]	● 1.5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⁴ [equality action plan(sexual orientation)]	
	헌법(성별정체성) [constitution(gender identity)]	
	고용(성별정체성) [employment(gender identity)]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goods & services(gender identity)]	
	교육(성별정체성) ⁵ [education(gender identity)]	◎ 1.25
	보건/의료(성별정체성) [health(gender identity)]	
	평등기구(성별정체성) [equality body mandate(gender identity)]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equality action plan(gender identity)]	
가족 (Family)	법률(성별표현) [law(gender expression)]	
	법률과 공공정책(인터섹스) [law and public policy(intersex)]	
	혼인평등 [marriage equality]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similar rights to marriage)]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limited rights)]	
	동거 [cohabitation]	

가족 (Family)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 없음 ⁶ [no constitutional limitation on marriage]	● 1.89	
	공동입양 [joint adoption]		
	동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입양 [second-parent adoption]		
	양친자격 당연인정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인공수정(커플)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couples)]		
	인공수정(싱글)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singles)]		
	성전환자의 이성혼 ⁷ [trans people can marry a person of the other gender]	● 1.08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Hate crime and hate speech)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crime law(sexual orientation)]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speech law(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적지향)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crime law(gender identity)]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speech law(gender identity)]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gender identity)]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과 신체적 온전성 [Legal gender recognition & bodily integrity]	혐오범죄 규제 법률/정책(인터섹스) [hate crime law and/or policies(intersex)]		
	법적 수단의 존재 ⁸ [existence of legal measures]	● 1.5	
	행정적 절차의 존재 [exist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개명 [name change]	● 1.05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⁹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¹⁰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¹¹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¹²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강제적인 이혼 요건 없음 ¹³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연령 제한 없음 ¹⁴ [no age restriction]	
	아동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기 전 의료적 개입의 금지(인터섹스) [Prohibition of medical intervention before child is 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intersex)]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 expression]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¹⁵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last 3 years)]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¹⁶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last 3 years)]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no laws limiting expression(national/local)]	● 2.8
난민 [Asylum]	법률(성적지향) [law(sexual orientation)]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sexual orientation)]	
	법률(성별정체성) [law(gender identity)]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gender identity)]	
	법률/정책/다른 인정 수단(인터섹스) [law and/or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intersex)]	
계 [Total]		12.32%

-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rainbow-europe.org>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항목이 있으나,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형법 등의 개정으로 남성 역시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이성간 강간의 경우만 해당된다. 동성간 강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되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혼인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시하는데, 한국 헌법상 이러한 혼인의 정의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다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다.
- 성별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과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함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19세 이상 행위능력자인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년일 것을 요구함
-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현재 혼인중인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혼인중이 아닐 것을 요구함
-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은 사전 승인되어 있던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의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장소 사용을, 행사 2주일 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추모분위기를 감안하여 퀴어문화축제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사 승인을 전격 취소하였다.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거리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옥회집회 금지통고를 하였다.
-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 등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인권이 아닌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곳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해 2016. 6. 1심에서 승소하였고,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017. 3. 2심에서도 승소하였다.



1 범죄화

헌법재판소,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

2016. 7. 28.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과거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동성에 처벌법’이라고 불리며 위헌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에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하는 한편,¹ 군사법원이 군형법상 ‘추행’죄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² 이 조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1년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그 기한을 석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위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³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동성에 혐오/공포에 기반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적 논리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성사

2016년 10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면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2017년 1월까지 입법청원 운동에서 12,207명이 입법청원에 동참해, 군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는 2017. 1. 17.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하는 성소수자인권단체 모습
 ©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좋아요 페이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군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열린 입법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라며 "거리, 학교,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준 12,207명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⁵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적 균형법상 '추행'죄 적용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6. 4. 25. 한 남성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균형법상 '추행'죄를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강제구금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단체에 대한 당사자의 신고와 동료 병사였던 목격자들의 진술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다.

2014년 육군 37사단에서 두 병사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둘 중 입대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던 병사는 균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 5월 전역 때까지 5개월 동안 사단 의무실에 격리되어 외출, 외박, 휴가는 물론 전화,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 있었다. 반면 자신은 이성애자이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병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동성애자 병사는 상대 병사에 비해 계급도 낮고 체구도 왜소했으며 강제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만약 동성애자 병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했다면 균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하나, '동성애 처벌법'인 균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⁶

인권단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한 명의 동성애자가 경험한 역울한 사연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의 현주소"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⁷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2 제22사단보통군사법원 2008. 8. 6.자 2008고10 사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직권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4 「유엔에 귀담은 현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지하면 전투력에 위해"」 <한겨레>, 2016. 8. 1.자
 5 「"군대 '추행죄' 폐지하라"…'성소수자 인권보호' 입법 청원」 <뉴스시스>, 2017. 1. 17.자
 6 「균형법 제92조의6」 <한겨레>, 2016. 5. 1.자
 7 「육군 37사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오마이뉴스>, 2016. 4. 28.자

2 차별철폐와 평등

성소수자 차별금지규범 반대운동, 인권 관련 법률·조례의 제정 가로막아

2016년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 단체(이하 '보수개신교계 등')의 성소수자 차별금지규범에 대한 공격은 계속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제2조제4호)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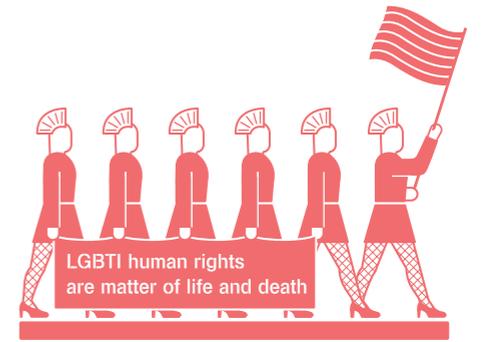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2016. 1. 26.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조항 중 '성적지향'이 "동성애 옹호 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입법, 사법, 행정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위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보수개신교계 등은 이외에도 각종 토론회, 포럼, 성명서, 개정청원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 삭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보수개신교계 등에 의해 철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6. 11. 7.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개신교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기업의 인권 보호 정책은 곧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등에 항의전화를 하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대의견을 1만 건 이상 게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발의의원들은 이러한 압력에 발의 2주만에 이 법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²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 관련 조례와 현장들도 보수개신교계 등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따라 대부분의 제정이 가로막혔다. 조례안에 '성적지향'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 광진구는 2016. 8.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광진구기독교연합회' 등 보수개신교계는 위 조례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일하게 '종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사이비 이단'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 반대운동을 벌였다. 광진구는 결국 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³

안산시 2015년부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당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다. 안산시는 2016년 6월 인권조례안 재심의를 위해 다시



공청회를 열었으나 역시 보수개신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⁴ 안산시의 위 조례안은 '성적지향'과 같은 성소수자 관련한 문구를 담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안산시 동성애 반대 시민대책협의회'는 "현 조례안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조례안에 포함된 인권 개념이 확대해석돼 각종 성적지향의 옹호, 권장, 강요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고 인권조례 반대운동의 이유를 밝혔다.⁵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1월 발의되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2016. 9. 9.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위 조례안은 애초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보수개신교계 등의 반발에 따라 위 정의조항 중 '법률'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는 문구들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보수개신교계 단체들이 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시의원들을 압박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결되기에 이르렀다.⁶ 인천시에서는 이후 '인권'과 관계된 모든 조례의 제정이 무산되었다. '인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조례안',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인권 관련 개별 조례로서 발의되었으나 "조례안의 모범은 인권조례고, 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등의 이유로 역시 반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모두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⁷

대전시에서는 2016. 4. 25.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로 20여분 만에 무산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격렬히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대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지지 성격을 띠고 있어 대전지역 학교에 동성애적 요소를 더욱 가중화할 수 있다"는 등 보수개신교계 등의 반성소수자 논리가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⁸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수개신교계 등은 헌장 초안의 실천규약 법적 근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문구가 들어가는 점을 들어 헌장이 '학생들의 동성애를 허용'한다며 반발하였고, 결국 충북도교육청은 2016. 5. 31. 논란이 된 문구들을 모두 삭제한 형태의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하였다.⁹

더욱 심각하게는 이미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서 '성적지향'의 명시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조례」는 2016. 6. 22. "사회통념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개정이유를 달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사유로 나열되었던 '성적지향'이 삭제되었다.

한편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5명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 예방을 제안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보수개신교계 등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의 대상이 되었다.¹⁰ 한국교회언론회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

족형태'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족, 동거 남녀, 한부모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 동성에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며 위 법률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이러한 반대운동의 압박으로 결국 법률안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의 문구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으로 수정하였다.¹¹

이와 같이 보수개신교계 등의 반성소수자 운동이 '인권', '평등', '다양성'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법률과 조례들 일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나아감에 따라,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제도의 수립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와 지자체 등은 "동성애 조장" 논란이 되는 법률 또는 조례를 모두 철회·보류하거나 문제된 문구를 삭제하는 등 반성소수자 운동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인권 관련 법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은 당분간 계속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주요 당의 소극적 태도

2016년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에서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을 펼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들을 주요 총선 과제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요 당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6. 3. 8.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유권자로서의 힘을 드러내는 캠페인으로서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가 발족하였다. 레인보우보트는 발족에 앞선 사전 캠페인으로 성소수자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투표에서는 2016년 2월 반성소수자 단체가 주최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 발언을 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¹²이 '가장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레인보우보트는 이어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유권자 선언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총 5,664명의 선언자가 유권자 선언에 참여하였다.¹³

레인보우보트는 또한 각 정당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인권기본계획> 마련,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동성결혼 법제화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3당은 답변을 거부하였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든 문항에 찬성했다.¹⁴

한편 인권시민단체들은 총선을 전후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20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강조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쟁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쟁점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3월 각 정당에 위 핵심 쟁점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였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라고 답하면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다'고 답변의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질의 전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¹⁵ 국민의당은 애초 '찬성' 답변을 하였다가 3월 29일 홈페이지 브리핑을 통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답변은 실무자의 착오로 당의 공식 입장이 잘못 알려진 것"이며 "국민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라고 입장을 바꿨다.¹⁶ 참여연대는 2016. 5. 26.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과제"로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¹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 6. 22. 20대 국회의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¹⁸

1 「인권위법서 동성애 지칭 '성적 지향' 삭제... 反동성애 단체 포럼 개최」 <국민일보>, 2016. 1. 26.자
 2 「개신교 보수세력의 압력에 또 다시 굴복한 국회」 <민중의 소리> 2016. 11. 23.자
 3 「광진구, 인권조례 제정 보류하기로 결정」 <업코리아>, 2016. 9. 10.자
 4 「안산시 인권조례안, 시의회에 1년여 동안 '계류」 <뉴스1>, 2017. 1. 30.자
 5 「동성애 반대 안산 시민단체 "인권 조례안 철회해야"」 <연합뉴스>, 2016. 6. 23.자
 6 「인천시에 인권조례가 없는 이유를 들여다보니...」 <뉴스1>, 2016. 9. 12.자
 7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동성애 조장"」 <경인일보>, 2016. 11. 18.자;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 2016. 11. 28.자 참조;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종교계 반발로 무산」 <기호일보>, 2016. 12. 16.자
 8 「갈길 잃은 대전학생인권조례」 <금강일보>, 2016. 4. 26.자
 9 「"존중하고 배려하세요"...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연합뉴스>, 2016. 5. 31.자
 10 「박경미 의원 '한부모가족법' 발의에 '동성애 조장' 항의 시달려」 <여성신문>, 2016. 8. 16.자
 11 「박경미 의원 "동성애 조장 우려 문제되는 용어 삭제"」 <크리스천투데이>, 2016. 8. 19.자
 12 「김무성·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 "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경향신문>, 2016. 3. 4.자
 13 「제 20대 총선 레인보우 유권자선언 결과보고서」,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 2016년 5월, 14쪽 이하
 14 「성소수자 인권 요구안... "주요 3당은 답변도 안해"」 <연합뉴스>, 2016. 4. 1.자
 15 「보도자료 -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쟁점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3. 2.자
 16 「미국엔 매튜 셰퍼드 법, 한국엔 차별금지법」 <한국일보>, 2016. 6. 20.자
 17 「미국엔 매튜 셰퍼드 법, 한국엔 차별금지법」 <한국일보>, 2016. 6. 20.자
 18 「민변 "대법관 구성 다양화하고, 대법원장 후보 제청권 폐지해야"」 <연합뉴스>, 2016. 6. 2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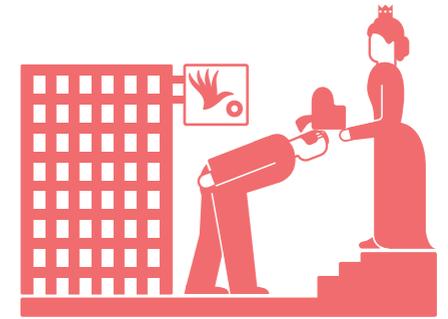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3-1.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최이우 비상임위원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국가인권위원회 최이우 비상임위원이 공개포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두둔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6. 11. 1.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이우 비상임위원과 이성호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¹ 2016. 10. 27. 최이우 위원이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하여 "국가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교묘하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²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최이우 위원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성소수자 차별선동으로 취임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질의에 대해 이성호 위원장만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인권위원회는 각각 개별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인권위원 개인이 외부 포럼에서 한 발언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공동행동은 2016. 11. 22.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이우 위원의 사퇴와 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준수하지 않은 최이우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으며,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선동행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최이우 위원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하였다.³



2016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는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2016. 9. 5.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권고⁴를 내렸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과 인권교육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핵심과제로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아우팅 대책,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고, 군복무를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를 신규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16년 9월 실시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NAP 초안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차별구제와 관련하여, 2016. 8. 3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서 HIV감염인을 제외하는 모집요강 규정을 병력 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아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2016. 9. 8.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검진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로 판단하여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에 법제 개선 및 대책마련을 권고했다.⁵ 그러나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균형법 추행죄를 적용해 격리조치 등 인권침해

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2016년 12월 진정을 기각했다.⁶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환적출을 강요당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1년 8개월 후에 각하결정을 내렸다.⁷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발표를 계속 연기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행위로 진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⁸

국제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4. 법무부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초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⁹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5. 대한민국에 내린 최종견해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 보장’에 대한 이행정보를 1년 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6. 11. 10.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인 차별 금지 노력을 보일 것과, 균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¹⁰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2016년 11월에는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고(수행기관: 장애여성공감), 2016년 12월에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¹

기업·공공기관 인권존중 장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성소수자단체 반대로 철회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장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¹²이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단체의 반대로 발의 2주만에 철회되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2016. 11. 7.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존중 인증’을 도입하여,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모범적 경영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계약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반성소수자단체들은 개정안이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동성애자 강사의 강의를 거부한 기업은 인권 차원에서 패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하였다.¹³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댓글이 1만개 달리는 등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11. 21.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성소수자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성적지향’의 삭제를 계속 요구해왔다. 83개의 반성소수단체와 보수개신교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은 2016. 6. 23.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공개질의’를 보냈다. 질의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됨으로써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문제점이 있다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반성수자단체 등의 공격은 차별금지법으로도 이어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3-2. 국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6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2016년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이 두 건 있었다. 2015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는 정기총회를 위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에 대강당 대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련관 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 하였고 친구사이는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수련관이 모 연구소 포함 5개 기관에는 대강당을 대관한 적이 있음에도 친구사이에만 대관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 2. 15. 대관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청소년수련관 대관 현황 점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15·16}

또한 2016. 8. 9. 시민인권보호관은 HIV 감염인에게 차별적 진료를 한 서울 보라매병원의 행위를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침해로 판단했다.¹⁷ 2015년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비닐로 의료용 의자 등을 감싸는 등 과도하게 감염관리를 하여 물의를 빚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를 인지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병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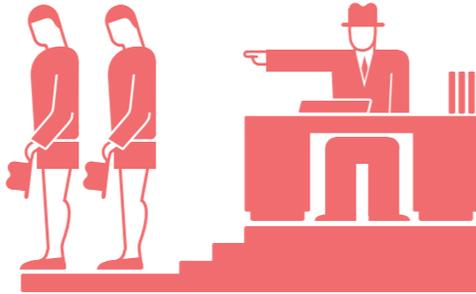
1 「성소수자 차별발언 최이우 인권위 비상임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공동행동, 2016. 11. 2자.
 2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 논의...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2016. 10. 29.자
 3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 두둔하는 위원장..이게 인권위냐」 <비마이너>, 2016. 11. 22.자
 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5 자세한 내용은 16. 보건/의료 참조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000 결정. 자세한 내용은 7. 군대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6. 6. 30.자 14-진정-0891200 결정. 자세한 내용은 7. 군대 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 2016. 1. 13.자 15-진정-0764900 결정.
 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10 자세한 내용은 20. 국제인권메커니즘 참조
 11 자세한 내용은 19. 조사/연구 참조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334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 11. 7.
 13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국민일보>, 2016. 11. 20.자
 14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삭제하라」 <뉴스타운>, 2016. 6. 20.자
 15 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2. 15.자 15신청-95 결정
 16 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17 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자-1, 15신청-104(병합) 결정
 18 자세한 내용은 16. 보건/의료 참조

4 고용

글로벌 기업들, 성소수자 채용 장려 등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 피력

영국계 화장품 회사인 러쉬코리아는 2016. 6. 11. 제17회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축제 현장에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매장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핑크이력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¹ 러쉬코리아측은 한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핑크이력서를 통해 러쉬코리아처럼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기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행사의 기획 취지를 설명하였다.²

한편 이 날 퀴어문화축제에는 러쉬코리아 외에도 구글코리아, 아메리칸어패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성소수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기업”이고 “다양성은 회사 안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축제 참가 이유를 설명하였다.³



러쉬코리아의 핑크이력서 모습 © 캠퍼스 잡앤조이

1 「성소수자들의 날...거리에 모인 '무지개빛' 물결」 <한겨레>, 2016. 6. 11자

2 「'채용도 당연히 커밍아웃'...2016 퀴어축제, 러쉬(LUSH) '핑크이력서' 받아」 <캠퍼스 잡앤조이>, 2016. 6. 9자

3 「서울광장 가득 채운 무지개 메시지... '나는 퀴어입니다.'」 <경향신문>, 2016. 6. 11자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대관 불허에 대해 평등권 침해 확인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시설 대관을 거절한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15년 11월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수련관에 대관 신청을 하였으나,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신청을 받은 모든 날짜에 대관이 불가능하며 대관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대관을 신청했던 시간에 내부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된 일이 없었던 사실과, 유사한 조건에 있었던 다른 단체에는 대관을 해주었던 사실 등이 이후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위 결정문에서 ‘서울특별시립시설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수련관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당 수련관의 시설대관 현황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수련관의 전체 직원과 대표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평등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의 전달을 서울특별시에게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성소수자 차별행위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위 수련관은 2014년 11월에도 같은 단체의 대관 예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소 통보했다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항의를 받은 후 통보를 철회한 일이 있었다.²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역시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청소년인권팀 행사에 대한 대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³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성별표현 차별적 정책 포함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을 근거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취지로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경복궁, 창경궁 등의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을, 여성은 여성한복을 입었을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⁴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6년 10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궁 한복 무료입장의 취지는 전통 계승”인데, “이런 일(남녀 한복을 바꿔 입는 일)은 전통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알려지자, 성별에 따른 특정복장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2017.1.1 변경)

구분	변경 전(2017.1.1 이전)	변경 후(2017.1.1 변경)
공통	1. 전통한복·생활(가칭)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2.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함 ※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함	1. 전통한복·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2. 성별에 맞게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동무머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하의를 반드시 모두 갖춰 입어야 함 -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함 ※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
Q	여성 관람객이 저고리와 바지(남성한복 바지 모양)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A	아닙니다. 여성용 여미는 것의 저고리에 치마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하며, 치마는 통치마·플치마 관계없습니다.	
Q	남성 관람객이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A	(2017.1.1 이전)아닙니다. 남성은 여미는 것의 저고리와 한복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2017.1.1 변경)아닙니다. 남성은 여미는 것의 저고리와 사복바지에 준하는 바지를 입은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성별에 맞는 복장을 요구하는 경북궁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문화재청 경북궁

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정책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경복궁 한복 무료입장규정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다”고 비판하는 플래시몹 행사도 열렸다. ‘퀴어페미니스트 파티 슬랩파티 기획단’ 소속 회원들은 스스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남성한복 차림으로 케이팝 가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 행사를 2016년 10월 16일 경복궁 앞에서 진행하였다.⁶

기업들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문제돼

온라인 업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이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6년 8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은 성소수자 스티커의 한국 판매를 불허했다. 라인 측은 이용자가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스티커마켓에 한 한국 스티커 제작자가 남성 커플이 함께 운동하고 요리하는 등 일상을 보내는 모습,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모습 등을 묘사한 스티커를 올려 판매 개시를 요청하자, “문화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스티커의 판매 국가를 제한하였다. 판매가 제한되는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되었다. 제작자는 라인의 조치가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항의하였으나 라인 측은 ‘제재를 가한 것은 캐릭터가 옷을 덜 입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작자는 현재 판매 중인 다른 스티커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신청인의 스티커가 노출이라는 점에서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였다.⁷

같은 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 음성채팅 서비스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가 포함된 제목의 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보도되었다. 한 대학생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토크온”에 ‘스물한살 동성애자와 함께하는 채팅방’이라는 제

목으로 방을 만들자 5분여 만에 운영자로부터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음란/욕설 등)’라는 근거로 신고가 들어왔으며 하루 동안 이용을 금지당했다. 위 이용자는 이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채팅방’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방을 만들었으나, 1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방이 폐쇄되고 1주일 이용금지 통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용자가 위 조치에 항의하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청소년들이 모두 보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런(성소수자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할 수 없”고 “이용 제재 조치도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대상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포털 등의 차별적인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면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에 별점 부과의 근거와 기업 공식 운영정책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하였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은 답신을 통해 문제된 조치는 세부적인 운영정책이 미흡하여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즉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고 고객센터를 포함한 관련부서들에 전파/적용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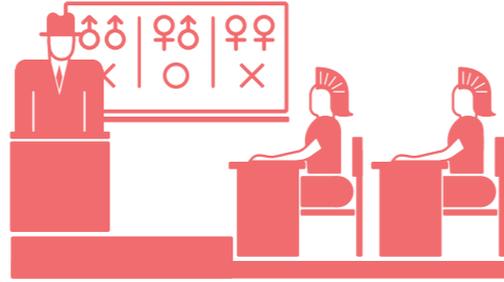
한편 기업이 이용자를 성소수자 혐오성 광고에 노출시켜 비판을 받은 사건도 발생하였다. 온라인 대형서점 알라딘은 2016년 6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도서인 『무성애를 말하다』를 주문한 이용자에게 동성애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의 광고 전단을 함께 발송하였다. 주문자가 알라딘의 반성소수자 도서 광고 전단 발송에 항의하는 트윗을 게재하자, 알라딘 측은 이에 사과하며 광고의 내용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신간 홍보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알라딘 측은 “소수자 혐오 사상을 담은 서적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서적 전단 광고 자체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¹⁰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 2. 15.자 14신청-95 결정
2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4』 SOGI법정책연구회, 2015. 33~34쪽
3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5. 7. 22.자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2016. 40쪽 참조
4 「고궁 한복 무료입장, 여성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한겨레>, 2016. 10. 4.자
5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고궁 한복 무료입장 젠더차별 논란, <여성신문>, 2016. 10. 6.자
6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만 무료 입장?」 고궁 한복 무료입장 규정 변경하라, <경향신문>, 2016. 10. 16.자
7 「네이버 자회사 라인, 성소수자 스티커 한국판매 불허」, <한겨레>, 2016. 9. 23.자
8 「네이트온 음성채팅 ‘성소수자’ 대화방 “미풍양속 해친다” 제재」, <한겨레> 2016. 8. 25.자
9 「보도자료 - 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 8. 30.자
10 「알라딘, 성소수자 서적에 버젓이 동성애 혐오 광고지 발송」, <여성신문>, 2016. 6. 23.자

6 교육/청소년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교육 교사연수 취소

교육부가 2015년 2월 개발, 보급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 전반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인권침해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 교육부가 전국의 성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2015년 2,383명, 2016년 7,697명), '학교성교육표준안' 전에 개발, 운영 중인 성교육 연수는 중단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²

2016년 9월, 성교육담당 교사 700여명이 신청했던 온라인 성교육연수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요구로 갑자기 취소되었다. 해당 성교육연수는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의 '우리가 알고 싶은 거침없는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온라인 강의연수로 성교육전문기관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4년에 기획한 30시간짜리 수업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다룬 '성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단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티처빌'에 해당 강의를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을 권고하여 해당 강의가 취소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성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강의를 지원하는 형태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반대 민원을 받아 연수지원을 철회하였다.³

교육부는 2016. 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학교 성교육 자료 및 표준안 운용실태 연구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토론자로 평소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을 섭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⁴

충청북도교육청, 성소수자 권리 삭제한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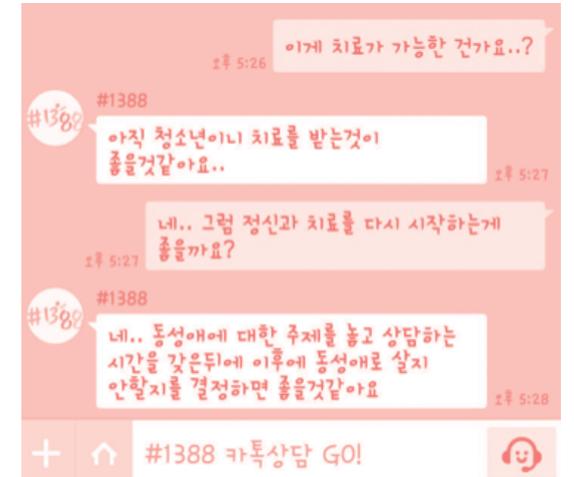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5. 31.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을 최종 선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4. 29.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 자료'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조장하는가?"라는 질문항목에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어디에도 '동성애'란 단어는 없습니다", "권리헌장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표준안'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규약 제4조 해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금지 조항 중 성적 지향과 사상, 미혼과 기혼 등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애초부터 제외하였습니다",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여 부록에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내용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⁵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무산

2016. 4.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었으나,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여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⁶ 이에 따라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발의가 연기되었다.⁷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금지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없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조항도 없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과 비교하면 학생권리 보장의 명확성과 조문의 구체성, 조례 실행력에 대한 장치 등에서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⁸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전화 1388 상담원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아직 청소년이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동성애라는 주제로 상담을 받고 나서 동성애자라고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전화 1388 상담원이 받는 통합교육에는 성소수자 관련한 교육이 없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88 홈페이지에 있는 '고민해결백과' 코너에는 "성 정체감(동성애 포함)"과 "이상 성행동(노출증, 관음증, 가학성 등)"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 동성애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학부모 지침서 <손에 잡히는 성(성)>에는 "청소년기에 흔히 가지게 되는 일시적인 동성애적인 성향", "우리 나라는 서양에 비해 남녀공학이 적어 부담 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동성이어서 쉽게 빠져든다", "일시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동" 식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⁹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와 청소년 성소수자의 카카오톡 상담내용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중학교 도덕교사, 동성애혐오 발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교육청 진상조사

서울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동성애혐오 발언을 하여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고, "동성애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다. 동성애자는 싸그리 모아 불태워야 한다"며 동성애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총신대학교는 2016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깃발을 들고 행진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깡총깡총' 개설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관련 계정을 폐쇄하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며, "학칙에 의거하여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하여 제적 처리한다"고 밝혔다.¹¹ 총신대는 "총학생회와 교수들이 조사한 결과 학내에 동성애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깡총깡총이 재학생을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 그러나 총신대는 대외적으로는 성소수자 재학생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깡총깡총' 소속 재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색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¹³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2016년에도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이 게시한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2016. 3. 1. 성소수자 모임인 '서강 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이하 '춤추는Q')'가 게시한 현수막을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로 훼손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적발되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간성, 퀘스처너리",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학우들의 새학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춤추는Q, 서강대 여성주의학회 틀깸 등 학생 자치기구는 해당 교수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교수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침범이자 같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¹⁴ 서강대 총학생회와 춤추는Q는 2016. 3. 10. 해당교수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¹⁵ 해당 교수는 2016년 8월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학생 쪽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포스터와 현수막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¹⁶



훼손된 채 발견된 서강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현수막 모습
©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SNS 모임이 등장하였다. 2016. 1. 8. 만들어진 '고신대 반동성애부'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에서는 "헬지비티'(HELLGBT, 성소수자를 지옥과 연결한 말)라는 말을 씹시다.", "차별받기 싫으면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조용히 동성애 하세요."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 트위터 운영자는 한겨

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의 역차별로부터 이성애자들을 지키는 것이 활동 목표"라고 밝혔다.¹⁷ 이외에도 '○○대 반동성애 모임'이라는 계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아우팅'을 제안한 백석대 반동성애 모임 트위터 계정,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빠진 이유로는 미국정신과의사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협박당했기 때문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한세대 반동성애 모임 등이 있다.¹⁸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6. 1. 22. 서울 중앙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는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권유하는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시사회를 열고 중앙대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 회원들을 시사회에 초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⁹

2016. 9. 22.에는 목원대학교 교정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은 총동창회 측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성결한웨슬리안운동 회복준비위원회'에서 내걸었는데, 목원대 재학생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회원들이 이날 오후 목원대 운동장을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다.²⁰

서울 한 사립대, '동성애 비하' 강사 교체

서울 한 사립대에서 교양 수업 강사가 동성애 비하 발언을 해, 학교 측이 해당 강사를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5월 이 대학의 교양수업 강의를 맡은 A씨는 강의 도중 성소수자 정체성은 질병이며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동성애자의 100%가 에이즈 환자"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본인의 견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 등은 이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해당 강사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하고, 앞으로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혐오 발언 자제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동도 전체 학부 및 학과장실로 보낼 방침을 세웠다.²¹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통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하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2016. 9. 7.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 본부와의 논의 과정 및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보류됐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협의회와 기독교총동문회는 2016년 9월 '2016 서울대 기독교 포럼'을 개최하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서울대학교가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며, "인권가이드라인에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과 종교 차별금지가 문제"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²²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 당선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김보미씨가 당선된 이후, 연세대학교 제28대 총여학생회장에 마태영씨,²³ 한국과학기술

원(카이스트) 제31대 부총학생회장에 한성진씨,²⁴ 계원예술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장에 장혜민씨가 당선되었다.²⁵

1 SOGI법정책임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 43쪽 참고
 2 『성명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압까지』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2016. 9. 30.자
 3 『"성교육표준안에 맞지않다"... 교사 700명 연수 중지한 교육부』 <머니투데이>, 2016. 10. 5.자
 4 『동성애 혐오' 토론자 모신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공청회』 <한겨레>, 2016. 7. 15.자
 5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공금하십니까? 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블로그, 2016. 4. 29.자(2017. 3. 21. 최종방문) http://blog.naver.com/cbe_news/220696452050
 6 『보수세력 반대에 대안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 <오마이뉴스>, 2016. 4. 25.자
 7 『대전학생인권조례 '발의 또 연기』 <한겨레>, 2016. 5. 4.자
 8 『대전학생인권조례 반대 '거짓 논리』 <한겨레>, 2016. 3. 16.자
 9 『청소년전화 1388 "동성애는 치료를..." 황당한 상담 - 상담원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6. 10. 15.자
 10 『"중학교 도덕교사가 상습 성희롱·폭행"..경찰, 교육청 진상조사』 <파이낸셜뉴스> 2016. 12. 12.자
 11 『충신대 강총장총 킷발 명의도용, 충신대측 검찰에 고소』 <크리스천포커스>, 2016. 8. 8.자
 12 『"학칙 따라 성소수자 징계" vs "소신 처벌 안돼"』 <한국일보>, 2016. 9. 2.자
 13 『투명인간을 만든 자, 투명인간을 찾다 - 충신대학교의 그 사람들, "우리는 강총장총이다"』 <NEWSM>, 2016. 12. 13.자
 14 『대학 교수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한겨레>, 2016. 3. 10.자
 15 『서강대 학생들,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한 교수 경찰에 고소』 <경향신문>, 2016. 3. 10.자
 16 『새학기 대학가서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연합뉴스> 2016. 3. 22.자
 17 『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혐오 동아리』 <한겨레>, 2016. 1. 25.자
 18 『대학가 성소수자 혐오 '위험수위'』 <한국대학신문>, 2016. 1. 29.자, 『대학 동성애 혐오 동아리가 SNS에 생겨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2016. 1. 28.자
 19 『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혐오 동아리』 <한겨레>, 2016. 1. 25.자
 20 『학교 교정에 '동성애 반대' 현수막, 성소수자들 "인권침해"』 <오마이뉴스>, 2016. 9. 23.자
 21 『서울 사립대 강사가 수업때 동성애 비하...학교측 '강사 교체'』 <연합뉴스>, 2015. 4. 24.자
 22 『서울대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2016. 9. 19.자
 23 『연세대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 마태영씨 당선』 <연합뉴스>, 2016. 11. 30.자
 24 『"가까운 곳에 성소수자 있음을 알고 싶었어요"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한성진씨 커밍아웃하고 출마해 당선』 <한겨레>, 2016. 12. 19.자
 25 『성명 - "흐르는 강물엔 마침표가 없다" - 2017학년도 학생 대표자 후보 3인의 커밍아웃을 환영하고 지지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2016. 12. 8.자

7 군대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과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2016. 7. 28.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2011년의 결정 내용을 반복하면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¹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2016년 10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에서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2017년 1월까지 입법청원 운동에서 12,207명이 입법청원에 동참해, 군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는 2017. 1. 17.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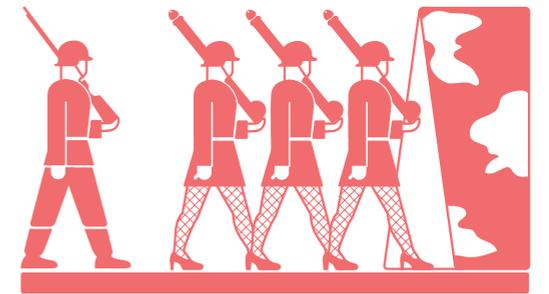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적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과 인권침해

2016. 4. 25. 한 남성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강제구금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단체에 대한 당사자의 신고와 동료 병사였던 목격자들의 진술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다.

2014년 육군 37사단에서 두 병사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둘 중 입대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던 병사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 5월 전역 때까지 5개월 동안 사단 의무실에 격리되어 외출, 외박, 휴가는 물론 전화,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 있었다. 반면 자신은 이성애자이며 일반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병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동성애자 병사는 상대 병사에 비해 계급도 낮고 체구도 왜소했으며 강제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만약 동성애자 병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했다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하나,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⁴

뿐만 아니라 해당 병사는 5개월 동안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종일 눕지도 못하고 침상 위에 앉아 수감과 다름없는 의무실 구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우울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12일간의 영창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무사에서는 위 병사에게 이 사건을 알



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사건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남자랑 섹스해 보았느냐”, “군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느냐” 등을 추궁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인권단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한 명의 동성애자가 경험한 억울한 사연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의 현주소”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⁵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고환적출 강요 진정 각하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로 병역면제를 위해서는 생식기 관련 수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고환적출 수술을 받은 후에야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MTF 트랜스젠더가 이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면서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데 대해 대해,⁶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하였다고 밝혔다.⁷ 진정인이 최종 병역판정을 받은 날이 2013년 10월이어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하였고, 병무청이 고환적출 요구한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1년 이후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를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삼아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병역기피 수사와 기소를 잇따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 무죄 판결

2016년에도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한 20대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11년 약 20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 유방이 발달하는 등 신체변화를 겪고 2011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제2국민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과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우울증으로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⁸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여성호르몬 주사는 여성의 몸으로 비가역적인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대하여 단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증

상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⁹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2016. 9. 28.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한 20대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법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지금까지의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성주체성장애 환자의 성별 정체성이 가족 내부에서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호르몬 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외양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형성하여 왔던 기존의 인간관계를 반대의 성을 바탕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면서, “최초 징병신체검사 당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원고로서는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반대 성별에 대한 동일시가 크지 않다거나 원고의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병무청의 원고에 대한 현역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¹⁰ 이 판결에 병무청은 상고를 포기해, 현역입영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병무청은 원고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원고에게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1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2 「군대 '추행죄' 폐지하라'...성소수자 인권보호' 입법 청원」 <뉴스>, 2017. 1. 17.자

3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1. 범죄화 참조

4 「군형법 제92조의6」 <한겨레>, 2016. 5. 1.자

5 「육군 37사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오마이뉴스>, 2016. 4. 28.자

6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요...인권위에 진정」 <연합뉴스> 2014. 10. 22.자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6. 6. 30.자 14-진정-0891200 결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965 판결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노1751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70807 판결(확정)

8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HIV 양성반응 의무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적 조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 5. 24. 소속 의무경찰 A씨가 HIV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강제 병원 후송, 동료 대원 전원의 강제 HIV검사, 내무반 소독 등 HIV/AIDS에 대한 편견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적 조치를 취했다.¹

단체 헌혈에 참여하였던 A씨는 보건소로부터 혈액 검사 결과 HIV 양성이라는 소견을 받고 경찰청의 고충처리반과 이 사실을 상담하였다.² 그러나 상담 다음날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A 일경'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당사자의 성(姓)까지 공개하였다.³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유지가 의무화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기사화된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A씨가 정밀 검사를 위해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확진 판정시 직권면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하고 내무 생활을 한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HIV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후속 조치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A씨가 생활하였던 내무반은 소독을 실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2016. 5. 25. 서울지방경찰청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⁵ KNP+는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지 못해 당사자의 안정과 안전을 저해한 점을 규탄하였다. 또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동료대원 전원 강제검사나 내무반 소독과 같은 인권침해 수준의 과잉 대응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과잉 대응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확산시킨 점을 비판했다.



1 「서울경찰청 기동대 의경 에이즈 양성 반응...경찰 "다른 부대원들 감염 여부 검진 중"」, <조선일보>, 2016. 5. 24. 자.
2 「오픈마이크 : HIV감염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마이너>, 2016. 6. 13.자.
3 「서울경찰청 기동대 의경 에이즈 양성반응...병원 후송」, <연합뉴스>, 2016. 5. 24. 자.
4 「오픈마이크 : HIV감염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마이너>, 2016. 6. 13.자.
5 「성명-경찰청의 무능하고 호들갑스러운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켰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6. 5. 25.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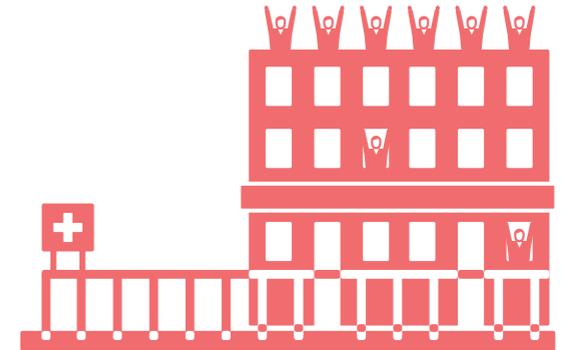
9 구금/수용시설/난민

이집트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난민 인정

2016. 10. 6.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집트인 H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의 결정을 뒤집으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H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집트에 살면서 성적지향을 숨겼던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H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¹

1심 난민 인정 알제리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패소

2016. 7.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는 알제리인 A씨의 난민 지위에 관한 소송에서 1심의 난민 인정 판결²을 뒤집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항소를 인용하였다.³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알제리에 귀국해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족 등의 위협을 피해 알제리 안의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⁴ A씨는 이에 2016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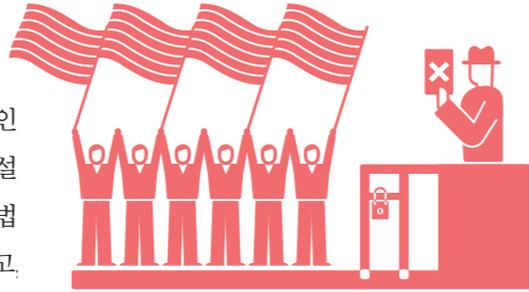


1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2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2016, 58쪽 ; 『Annual Review 2015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6, p. 69.
3 「알제리 남성 동성애자 난민 신청, 1심에선 YES, 2심은 NO」, <한겨레>, 2016. 8. 18.자
4 대전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청주)2015누10729 판결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법원,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국현)은 2016. 6. 24.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판결하였다.¹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4월 법무부는 자신들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불허하였다.²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이 단체가 법무부로부터 성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³

법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9. 김모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서울시민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6. 6. 11.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인권·노동·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대학, 종교기관, 연구기관 등이 104개의 부스 행사에 참여하였고, ‘퀴어퍼레이드’ 행진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2개 차로로 을지로2가와 회현사거리, 롯데백화점 본점을 지나 광장으로 돌아오는 2.9km 코스로 진행되었다.⁵

한편, 2016. 6. 10.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4년 물리력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방해했던 어버이연합과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⁶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성 키스 장면’ 심의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장낙인)는 2016. 3. 22. 네이버 TV캐스트가 제공하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에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에 대해 ‘자율 규제 권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해당 장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⁷ 이는 웹드라마에 대한 첫 심의였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소수자인권단체 모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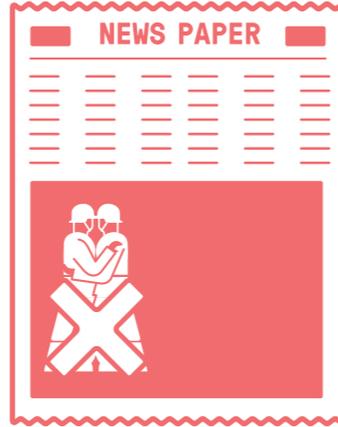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목)는 또한 2016. 4. 27. tvN <SNL코리아 시즌7> ‘SNL팬픽’ 코너에 대하여 행정지도 ‘의견제시’ 조치를 의결하였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을 받아, 위 코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⁹

1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 62쪽 참고
 3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결과 보고서』 2016. 1. 29.자 (2017. 3. 16. 최종방문) <http://freeassembly.net/news/statement-republic-of-korea-korean/>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자 2016카합337 결정
 5 『오늘은 성소수자의 날...거리에 모인 '무지개빛 물결』 <한겨레>, 2016. 6. 11.자
 6 『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해소, <한겨레>, 2016. 6. 10.자
 7 『심의위, '대세는 백합' 동성키스에 제동? - 오픈넷, 웹드라마상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제기』 <미디어스>, 2016. 3. 25.자
 8 『논평/보도자료 -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오픈넷, 2016. 3. 25.자
 9 『블랙비 지코-박경 '동성키스' 콩트...심의위, '동성애 조장』 <미디어스>, 2016. 4. 27.자

11 혐오표현

소수자 차별 조장 기독교자유당 인권위 진정

2016. 5. 24. 3195명의 개인과 62개 단체가 기독교자유당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하였다. 기독교자유당은 2016. 3. 3.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으로, 같은 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동안 선거공보, 후보자 연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악법(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선거 공약을 펼쳤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는 특정질환들(에이즈, 성병 등)을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교리 전도를 금지하는 반기독교악법으로 묘사되고 있다.¹



20대 총선 결과 기독교자유당은 정당투표 2.64%를 득표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는 않았으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됐다.² 총선 이후 기독교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³ 이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선동과 증오 조장을 이유로 기독교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 진정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기독교자유당의 소수자 차별 조장 행위는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점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상 금지된 인종, 종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 선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정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자유당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였다.⁴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

2016. 2. 29.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독교 단체인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열렸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여 연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박영선 의원은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거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⁵ 이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6. 3.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였음을 규탄했다.⁶



기독교자유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한 성소수자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단체 모습 © 미디어스

한편, 2016. 9. 26.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의원은 국내의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젊은 남성들의 동성애”로 보이며, “감염경로가 명시적으로 젊은 동성애자가 주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와 같은 감염경로를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홍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젊은 동성애자들이 양성애, 이성애로 옮겨갈 경우에 AIDS 감염자 수가 견잡을 수 없다”고 하며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다.⁷

1 『소수자 차별 기독교자유당, 반헌법 집단』 3200여 명 인권위에 집단 진정, <비마이너>, 2016. 5. 24.자

2 『공직선거법』 제189조,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

3 기독교자유당 홈페이지 전면 및 주요정책 (2017. 3. 29. 최종방문) <http://clparty.kr/>

4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기독교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7. 3. 29. 최종방문) http://bit.ly/countering_hat

5 『김무성-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경향신문>, 2016. 3. 4.자

6 『성소수자 단체 ‘혐오 발언한 김무성-박영선 규탄’』, <오마이뉴스>, 2016. 3. 3.자

7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6. 9. 26.자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남성 동성애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종로 낙원동 지역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이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6. 8. 16. 01:00경 종로3가 낙원동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 회원이자 "지보이스(게이 합창단)" 단원인 20대 남성 동성애자 A씨가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30대 남성 행인에게 '호모새끼'라는 말과 함께 얼굴을 가격당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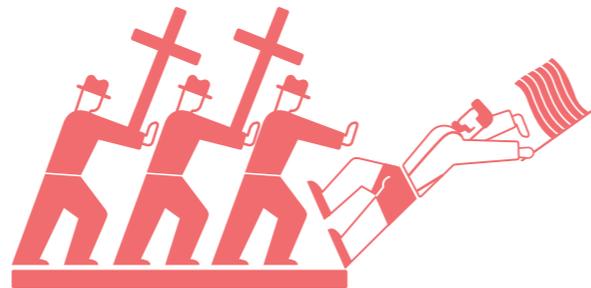
해당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종로3가 '친구사이' 사무실 인근으로 지난 수십 년간 게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한 지역이었다. 지난 2011년 10월, 11월에도 낙원동 인근 돈화문로 일대에서 3명의 남성이 동성애자들을 노려 집단 구타하는 연쇄 혐오범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친구사이'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소수자 혐오범죄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²

대학 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잇따라

2016. 2. 29. 서강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인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이하 '춤추는Q')'는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학우들의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학내 4군데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게시 다음날 저녁 한 개의 현수막이 군데군데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이 학교 화학과 교수의 행위로 밝혀졌다. 춤추는Q, 서강대 여성주의학회 틀깸 등 학생 자치기구는 해당 교수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교수는 현수막 철거를 시인하였으나, 공개사과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강대 총학생회와 '춤추는 Q'는 2015. 3. 10. 서울 마포경찰서에 재물 손괴 혐의로 해당 교수를 고소하였다.³ 그러나 해당 교수는 2016년 8월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학생 쪽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6. 3. 22.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성소수자 모임 '퀴이즈'가 서울대 순환도로변에 게시한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⁴ 한양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포스터와 현수막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훼손과 절취는 단순한 손괴죄나 절도죄가 아닌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며 "

이들이 조장하는 증오는 민주사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라면서, 성소수자 차별선동 및 혐오조장, 혐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대학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⁵



"동성애 이유" 폭행·살해한 사건 발생

2016. 3. 7.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 간 동성애 사실을 이유로 1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2015년 2월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있던 1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아산시 폐가 마당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다 불법영업으로 폐업한 이후 마약을 한 환각상태에서 B씨가 동료 여성 노래방 도우미와 "동성애 관계"라는 것을 알고 찾김에 폭행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⁶

동성애에 대한 호감 이유 폭행 사건에서 법원 "정상 참작"

2016년 6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사실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A씨가 마음에 든다는 고백을 듣고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⁷

이 사건과 관련해 2016. 9. 26.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재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⁸ 이것은 이른바 "게이 패닉(상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황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 감경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판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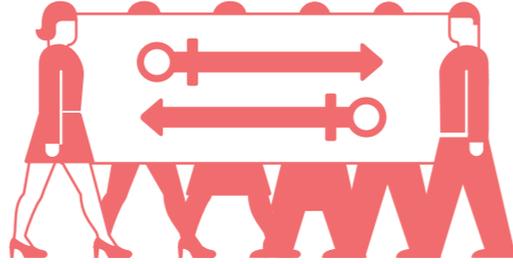
1 「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 '성소수자 혐오 범죄」 <비마이너>, 2016. 8. 25.자
2 「논평 - 동성애 혐오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6. 8. 25.자
3 「"성소수자도 환영" 현수막 훼손은 대학 교수」 <미디어오늘>, 2016. 3. 10.자, 「대학 교수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한겨레>, 2016. 3. 10.자, 「성 소수자 학생 환영 현수막' 훼손 교수 피소」 <YTN>, 2016. 3. 11.자
4 「새학기 대학가서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연합뉴스> 2016. 3. 22.자
5 「서울대 총학·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고소」 <연합뉴스>, 2016. 3. 31.자
6 「40대 마약사범, 동성애했다고 10대 소녀 살해 암매장 1년 만에 들통」 <서울신문>, 2016. 3. 7.자
7 「"나 동성애자, 형이 마음에 든다"고 한 애인의 전남친 두들겨 팬 30대」 <세계일보>, 2016. 9. 30.자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고단4225 판결

13 성별변경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 10년을 맞아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 콜로키움 개최

2016. 11. 29. SOGI법정책연구회는 광화문 변호사회 관 조영래홀에서 제5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했다. 2006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¹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원을 통한



성별정정이 가능해짐으로써,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대법원은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제거 및 성전환수술, 정신과진단서,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콜로키움은 대법원 결정 10년을 맞이하여 결정이 갖는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성별정정에 있어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날에는 전주지방 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박사, 그리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하였다.²

먼저 하정훈 판사는 기존의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면서, 성별 판단에 있어 사법부가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승현 박사는 해외의 입법례 및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성별정정 요건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정책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과도한 보정명령, 허가 지연 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에 대한 교육, 성별정정 통계 작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³

한편 SOGI법정책연구회는 콜로키움에 앞서 2016. 6. 22. 논평을 통해 현행 성별정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 허가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회는 성별정정 허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과 성별정정 요건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⁴

주민등록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

2016. 1. 27. 주민등록번호 중 7번째 자리가 남성은 1, 여성은 2 등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에 대해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번호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⁵을 내리며 2017. 12. 31.까지 개선입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성별표기 등 기존의 번호체계를 고수한 채 끝의 2자리만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별표기를 포함한 주민등록



차별적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습 © 미디어스

였으나 현재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이 드러나는 것은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사회생활을 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큰 장벽이 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67%가 관공서 업무 등 주민등록번호 제시 용무에 부담을 느낀다 답했고, 그 중 63.3%가 용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답했다. 또한 실제로 관공서 등 행정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도 24.4%로 나타났다.⁶ 한편 남/여 이분법으로만 표기되는 성별번호체계로 인해 인터섹스 영아는 한 쪽 성별로 지정을 강요 받고, 그 과정에서 동의 없이 비가역적인 성기수술을 받기도 한다.

진정인들은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2016. 5. 19.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년월일, 성별표기 등 기존의 번호체계를 유지한 채 뒷자리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대표발의)⁷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1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

2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로이슈>, 2016. 11. 10.자

3 하정훈 외, 「자료집」 제5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의미와 과제」 SOGI법정책연구회, 2016. 11. 19.

4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된 지 10년,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비마이너>, 2016. 6. 23.자

5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6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미디어스> 2016. 1. 27.자

7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2016. 1. 27.자 (2017. 3. 14. 최종방문) <http://act.jinbo.net/wp/9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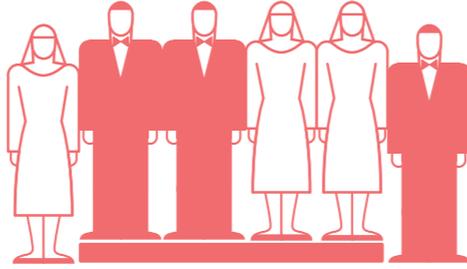
8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180쪽

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175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 8. 22.

14 가족구성권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2016. 5. 25.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¹ 이 소송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열고,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구청에서 불수리처분을 하여, 2014.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²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비록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일치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동의 자녀 출산가능성” 등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동성 간의 결합이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부부 혹은 가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을 진행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들 부부 이외에 레즈비언 부부와 게이 부부 등 다른 동성 부부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³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양섭)은 2016. 12. 5. 이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항고를 기각하였다.⁴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배우자 지위' 인정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배우자도 형사재판 관할, 영내 상점 이용 등에 있어서 SOFA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⁵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의 제도적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 64쪽 참고

3 『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제기』 <KBS뉴스>, 2016. 5. 26.자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5.자 2016브6 결정

5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6. 4. 18.자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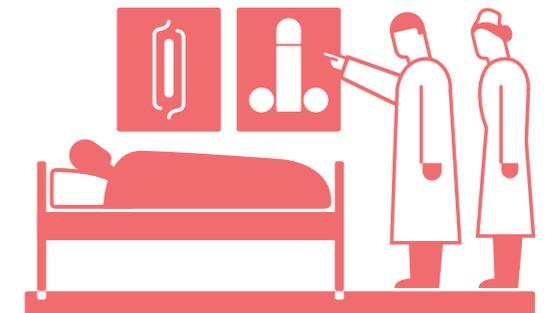
소수자 운동 관점 성과 재생산 포럼 개최

2016. 8. 23. '성과재생산포럼', 'IL과 젠더포럼'이 공동주최한 <소수자 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성과 재생산에 관해 장애, 연령,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주, 병력 등의 이슈와 교차점을 살펴보는 행사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의 발제와 함께, 장여성 운동, 성소수자 운동, HIV/AIDS 인권운동, 트랜스젠더 운동,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운동, 이주여성 운동 등의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성소수자 전체,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의 성과 재생산권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¹

낙태 의료인 규제 강화 반대와 낙태죄 폐지 운동

2016. 11. 11.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중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였다.

이에 '성과재생산포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70여 개 단체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와 SNS 해시태그 운동을 이어갔으며,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BWAVE (Black wave)' 등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상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²



1 『소수자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비마이너>, 2016. 10. 10.자

2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비상구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 요구』 <경향신문>, 2016. 10. 17.자, 『임신중절수술 처벌 강화 없던 일로..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촉구』 <여성신문>, 2016. 11. 16.자

16 보건/의료

HIV 감염인 신장투석 거부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IV 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2001년 HIV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15년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여 2015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HIV감염인의 경우 투석기계를 별도로 구입하고 인력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데 병원 사정이 어렵다”면서 투석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7월부터 병원을 옮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다.¹

세브란스병원은 과거에도 HIV 감염인 차별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한 고관절 수술 거부로 권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이 중이염 수술 거부로 권고를 받았다.² 이에 2016. 9. 26.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³에 의하면 HIV에 대해서는 감염주의만으로 충분하고 격리, 투석기계분리, 의료인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대해 이 사건의 차별 구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HIV 감염인 투석실태조사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⁴

대학병원, 간호사 폭행 이유 HIV 감염인 신장투석 영구 거부

2016년 12월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거부한 일이 보도되었다.⁵ HIV 감염인인 A씨가 간호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함에도 병원의 영구적 신장투석 거부로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부산의 다른 병원 역시 A씨가 HIV 감염인이고 외래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신장투석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한 세브란스병원 풍자 퍼포먼스 모습 © 비마이너

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9. 8.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검사를 강제하는 건강검진제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도개선 및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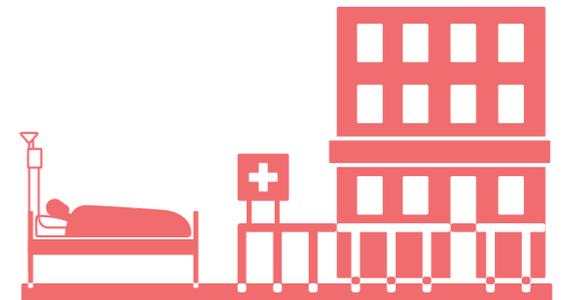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5월 울산교육청이 외국인 강사에게 재고용조건으로 HIV 검사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인종차별로 판단하고, 한국정부에 피해보상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⁷ 그러나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은 제외되는 HIV 검사를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게만 의무화하는 것은 인종차별 소지가 있고,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가져와 보건정책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무총리에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과 그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법무부에 대해서는 E-2 비자 관련 고시를 변경할 것, 교육부에 대해서는 E-2 비자 교사들의 신체검사 결과 제출 관련 규칙과 관행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시 HIV 감염인 배제 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31. HIV 감염을 이유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진정인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⁸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은 1967년부터 외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연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6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HIV 감염자는 지원자격이 박탈되고 합격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 HIV는 감염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해 제한이 불가피하다 주장하나”, “의학의 발달로 HIV 감염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 다른 국가들도 HIV 감염인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장하나,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사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을 제외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훈련에서 병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 차별이므로 삭제하라고 권고하였다.

국립국제교육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2017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에서는 선발 제외 사항에서 HIV 감염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제출 서류 중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에서는 여전히 HIV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⁹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시립병원 치과 시술에서의 HIV 감염인 인권 침해 권고

2016. 8. 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염 관리를 한 서울 보라매병원의 행위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¹⁰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2015년 10월 보라매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용 의자 등을 과도하게 비닐로 감싸고 스케일링 시술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¹¹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역시 인지사건으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진정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고 서울인권센터로 새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감염내과 전문가 시술 과정에서 HIV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밝혔고, 보라매병원 및 대한치과협회 지침에도 시술 시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에도 병원이 과도한 감염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조치는 HIV에 대한 편견에서 이루어진 인격권 침해행위라면서, “이 기회에 HIV 감염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편견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IV/AIDS 감염인을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병원협회 반발

요양병원 입양 제외 대상에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¹² 요양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015. 12. 23. HIV/AIDS 감염이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을 개정했다. HIV 감염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고 따라서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차라리 진료거부죄로 벌금을 내겠다면서 HIV/AIDS 감염인 진료를 거부한 사례도 발생했다.¹³

대한노인요양보호협회는 주된 반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에 대한 감염 우려와 에이즈환자에 의한 안전사고 사례, 절대다수가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의 성폭행 위험” 등을 들었다.¹⁴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¹⁵ 한편,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 12. 24.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2016. 11. 28. 국가인권위원회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여성공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HIV/AIDS 감염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인 중 생존자는 10,502명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24.6%가 HIV 감염을 이유로 약속된 수술을 받지 못했고, 40.5%가 수술이나 입원 시 별도의 공간이나 기구를 이

용해야 했다. 의료인에게서 동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은 경우도 2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두려움으로 응답자의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 대답했다. 차별은 건강문제로도 나타나 감염인의 34.0%가 우울감을, 41.7%가 자살시도를 경험을 했다. 한편 의료인 57명을 대상으로 의료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주된 차별원인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IV/AIDS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5점 척도로 수치화했을 때 그 점수가 4.39점으로 조현병(3.65점), 다운증후군(3.16점)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먼저 감염인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확충, 의료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 한국어판 발간 및 발표회 개최

2016. 4. 10.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의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이하 ‘건강관리실무표준’) 제7판의 한국어판이 공식 발표됐다. WPATH의 건강관리실무표준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전문가들의 최신의 합의를 담아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보건의료지침이다. 번역을 진행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한국어판 발표와 더불어 2016. 5. 1.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를 개최하였다.¹⁷

발표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이은실 교수는 ‘건강관리실무표준 번역의 의의 및 제 7판의 개괄’이라는 주제로 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에 대한 의료접근을 설명했다. 한국어판 제작을 함께 하기도 한 이은실 교수는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 자체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치료는 장애 교정이 아닌 성별위화감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번역을 계기로 현장의 의료인들의 인식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¹⁸ 실제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39.4%가 ‘의사 등 의료인이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알아봄’이라 대답하여, 의료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한편 건강실무표준 한국어판은 WPATH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1388’ 상담원이 동성애에 대한상담에서 이른바 ‘전환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졌다. 청소년 동성애자 A씨는 엄마가 커밍아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답답한 마음에 1388에 카카오톡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상담원은 A씨에게 “아직 청소년 이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상담을 받고 나서 동성애자로 살지 정해라”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 연락했고, “동성애자는 치료대상이 아니다”는 상담을 받고 서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²¹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강제로 교정하려고 하는 소위 ‘전환치료’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성

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²² 유엔자유권위원회 역시 2015. 11. 5.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³ 그럼에도 정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상담기관이 ‘동성애 치료’를 권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평동의 정민석 대표는 “동성애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이미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1388이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16.1%가 전환치료 권유를 경험²⁴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 12월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 조사는, 성소수자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및 한국에서의 전환치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1명이었고 그 중 387명이 상담 과정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387명 중 17.6%가 ‘상담자가 전환치료를 시도했다’, 17.3%가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성애를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할 수 있다’는 상담을 들어본 경우도 21.2%에 달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1,072명 중 16.1%가 전환치료를 권유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치료를 권유한 사람은 가족이 51.7%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지인도 30.2%를 차지했다. 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전환치료를 받은 사람은 3.5%(28명)이었는데 강요에 의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환치료를 실시한 사람은 심리상담 전문가(57.1%), 종교인(46.4%), 정신과 의사(28.6%) 순으로 상담, 의료 전문가 역시 전환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치료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5.4%가 해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피해의 종류로는 심리적 피해(9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의 파괴, 소통단절, 아우팅’ 등의 답변도 있었다.

- 1 「HIV 감염 이유로 위독 환자 투석도 거부하는 세브란스 병원?」 <비마이너>, 2016. 9. 26.자
-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4~85쪽 참조
- 3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 질병관리본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0. 8.
- 4 「기자회견문 - HIV감염인 신장투석 거부한 세브란스병원 -환자 탓 말고 감염관리표준지침 지켜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외 13개 단체, 2016. 9. 26.자
- 5 「간호사 폭행 에이즈환자 치료 거부 논란」 <KNN>, 2016. 12. 13.자
- 6 국가인권위원회 2016. 9. 8.자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상임위원회 결정
- 7 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7쪽 참조
- 8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1.자 16진정0306900 결정
- 9 국립국제교육원 「2017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 2017. 2. http://www.studyinkorea.go.kr/ko/sub/gks/selectBoardArticle.do?bbsTyCode=BBST03&bbsId=BBSMSTR_000000000461&authFlag=&nttlId=2683&bbsAttrbCode=BBSA03&pageIndex=1
- 10 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자-1, 15신청-104(병합) 결정
- 11 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4쪽 참조
- 12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15. 12. 23. 일부개정)」
- 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부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서 수용”」 <동아일보>, 2016. 3. 7.자
- 14 「에이즈 감염인, 요양병원 입원 강행 반대 포스터A2」 대한노인요양보호협회 홈페이지, 2016. 3. 28.자 (2017. 3. 14. 최종방문) http://www.kagh.co.kr/info/info01_1.html?jb.code=10&jb.idx=7230&search_key=jb.content&search_keyword=%EC%97%90%EC%9D%B4%EC%A6%88&page=&dep1=&dep2=
- 15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거부”가 인권탄압인 명백한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3. 11.자
- 16 이하는 장애여성공감(연구책임자 나영정),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6을 요약한 것이다.
- 17 「트랜스젠더 6% “의료 치료 거부당한 적 있다”」 <오마이뉴스>, 2016. 4. 21.자
- 18 「트랜스젠더 위한 치료 “장애 교정 아닌 고통완화”」 <의학신문>, 2016. 5. 4.자
- 19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173쪽
- 20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 WPATH홈페이지 (2017. 3. 15. 최종방문) http://www.wpath.org/site_page.cfm?pk_association_webpage_menu=1351&pk_association_webpage=8223
- 21 「청소년전화 1388 “동성애는 치료를...” 황당한 상담」 <일다>, 2016. 10. 15.자
- 22 강남순 외, 「동성애는 정말 질병인가? 전환치료의 허구성」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 23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CCPR/C/KOR/CO/4)」 2015. 12. 3.
- 24 이하는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6을 요약한 것이다.

17 사회보장

성전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

트랜스젠더는 현재 성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의 해소 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별정정 허가요건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의 전 과정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난 비급여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 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과 같은 자가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상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¹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비용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성 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배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혼인이나 동반자(파트너십) 등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보장 개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혜택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한다.²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유족급여를 제공하고,³ 고용보험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하면 잔여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하게 하는데,⁴ 이때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동성 파트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 동성 커플 중 한 편이 소득이 없이 상대방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연 15만원이 추가된다.⁵ 하지만 동성 커플은 실질적으로 부양관계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역시 동성 파트너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보험혜택

을 받는다. 이때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넓게 포함된다.⁶ 반면 동성 파트너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며 상대방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피부양자로서 제공되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동성 파트너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이호림 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2015. 12, 64-94 참조

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머지 연금도 이 조항을 준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5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참조

18 여론/미디어

18-1 여론

<국민인권익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국민인권익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전과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도가 가장 낮은 소수자 집단으로 평가되었다.¹

성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 1,504명 중 70.1%, 전문가 550명 중 81.6%가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² 한편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반 국민의 54.2%(15~29세 64.8%)가 “성소수자는 개인의 성적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성소수자는 자연스럽게 않고 사회적으로 위협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중은 4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³

이번 조사는 2005년, 2011년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번째 인권익조사이다.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권존중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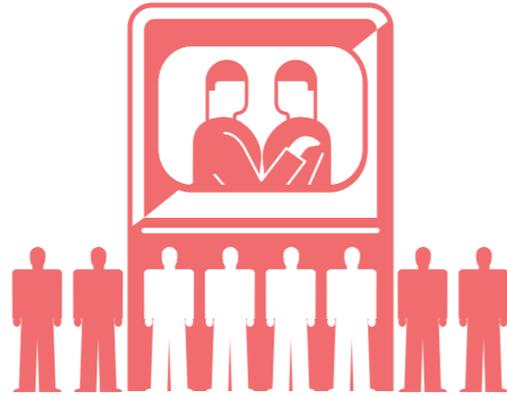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인가? 64.7% 동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16. 7. 16. 부터 3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략 3명 중 2명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⁵ 조사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 가운데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성소수자⁶(65%)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61.5%), 성별(60.3%), 종교(52.8%), 정치적 성향(42.6%)이 뒤를 이었다.⁷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43.6%로 비교적 낮았다. 인종·민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규제에 동의한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고, 성별(50.4%), 출신지역(45.5%), 성소수자(43.6%), 종교(31.9%), 정치적 성향(28.2%)의 순으로 규제 동의 비율이 낮아졌다.⁸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 55.8%, 동성애자와 가까운 관계 형성에 거부감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성애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성애자가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27.1%, 10.8%, 6.1%, 0.2%인 반면,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5.8%로 조사되었다.⁹ 2013년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 62.1%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도가 지난 3년 동안 다소 개선되



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동성애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60대(69.9%), 농림어업종사자(79.1%), 초졸이하(74.9%) 인구집단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유형의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과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았고, 동성애자(55.8%), 북한이탈주민(12.1%), 외국인 이민자·노동자(7.1%), 장애인(1.3%), 결혼가정자녀(1.2%) 순으로 조사되었다.¹¹

사회통합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소수자 집단별 사회적 포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6년 조사는 만19세 ~ 69세 8,000명을 대상으로 2016. 9. 1. ~ 2016. 10. 31.까지 실시되었다.¹²

18-2 미디어

방송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 행정지도

생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두 남성 연예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이 심의에 회부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2016. 4.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는 <tvN> 'SNL코리아 시즌7'에서 방송된 동성 간 키스신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¹³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제시'를 의결하였다.¹⁴

2016. 3. 26. 'SNL코리아 시즌7'에서 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다른 남성 멤버와 키스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장면이 방송된 후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 민원을 심의하면서 “상상하는 장면이라고는 하더라도 입맞춤 장면이 우리 사회 일반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회성 에피소드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노출시간 또한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제재가 아닌 '의견제시'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¹⁵ 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명은 '문제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심의결과에 영향으로 미치지 못했다.¹⁶

통신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포함된 웹드라마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요청

2016. 3. 22.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심의소위)는 웹드라마에 두 여성 간의 키스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 콘텐츠를 제공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였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2015. 12. 15.부터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을 온라인 상에 제공하였다. 총 8편의 에피소드 가운데 5편에서 동성 키스 장면이 등장하였으며, 이 장면들이 “어린·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의결에 앞서 민원이 제기된 장면이 “불법성이 미약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 「청소년보호법」상 동성애 규정이 삭제되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설명되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의 통념에서 어긋나는 행위...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 잘못하면 이 자체(동성애)를 용인해 주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¹⁸ 통신심위소위원장은 "앞으로 그런 쪽(동성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를 피력하였다.¹⁹ 심의 결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호 및 제12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밖에 필요한 결정'으로 자율규제 권고를 의결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2016. 3. 25. 논명을 내고, "이성 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²⁰ 방심위가 인터넷 콘텐츠의 동성애적 표현을 문제 삼아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방심위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시정요구'가 아닌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¹

<프리덤 하우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성소수자 콘텐츠 규제 지적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규제' 권고가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16년 11월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저해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동성애적 표현이 포함된 "네이버" 웹드라마 규제를 언급하였다.²²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터키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검열 시도가 행해지는 18개국에 포함되었다.²³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조사 대상 65개국 중 22위이며, 6년 연속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²⁴

<경남CBS>, 반성소수자 단체 소속 출연자와 성소수자 혐오 방송 진행

기독교계열 방송사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혐오적 인터뷰를 방송하여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경남CBS> FM '오! 해피데이' 제작진은 2016. 3. 24.자 방송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경남지부장을 출연시켜 소속 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아성애자, 동물들 간에 그런 성적행위, 수간 등 모든 것들이 합법화될 것",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24년 생명이 단축",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병들, 에이즈 등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을 통해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항문 파열 및 괄약근 기능이 손상돼 대변이 줄줄 흐른다"는 말을 하면서 한 방송인의 이니셜을 언급하였다.²⁵

방심위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성소수자를 저급한 표현과 함께 부정적으로 다루고, 관련 사례나 법안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또한 그 특정인을 폄하하는 내용 등을 방송"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전원일치 '주의'를 의결하였다.²⁶

<TV조선> 저녁종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적 기획 취재 보도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논리가 한 방송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기획 기사로 방송되었다.

<TV 조선>은 2016. 4. 29. 자 '뉴스쇼 판' 에서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에이즈 심각... "동성애 확산 때문?">, <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안 돼"...현실은?> 세가지 리포트를 연속으로 보도하였다.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동성애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오프닝 멘트를 비롯, 보도 전반에 동성애=사회 문제, 남성 동성애=에이즈라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논리가 팽배하였다. 보건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은 반론 형식으로 배치되었다.²⁷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이 세가지 리포트를 '나쁜방송보도'로 선정하였다.²⁸ 이 보도가 왜곡된 정보를 통해 동성애=에이즈를 부각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요양병원이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을 결합시켜 공포심을 자극하는 프레임"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는 2016. 7. 6. 심의에서 이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였다.²⁹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찬반양론을 모두 다룸으로써 균형성을 맞추려 노력"하였고, "전반의 내용과 맥락 등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를 현저히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보도의 공익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³⁰ 민언련은 방심위 심의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의결을 "방심위 인권 수준이 의심되는 '문제없음'의 사례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³¹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지속

10대 중앙일간지 가운데 하나이자 개신교계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일보>가 2016년에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 보도에 앞장섰다.

<국민일보>는 헌법재판소의 균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2016. 7. 1.부터 "남성 동성애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6회에 걸쳐 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³² 게이 데이팅앱에 올라온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 자극적인 게시물, 특히 군인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선별하여 기사화하였다. 기사에는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 "충격! 군복입은 남성을 개처럼 묶어놓고 하는 짓은?"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이 붙여졌고, "앱을 사용하는 동성애자 간부·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성소수자 단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16. 7. 1.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일보>의 취재결과로 "헌법재판소가 균형법92조의6을 반드시 합헌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2016. 8. 10.자 <국민일보>의 1면 상단에는 성소수자의 삶을 비하하고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³³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10여년 전에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인 이 되었고, 낮은 기초생활급여에 의존해 힘들게 살아야 했다는 개인사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의료사고나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은 없었다. 기사는 동성애자를 "육정에 끌려 하루하루"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고 추해"져서 "에이즈와 자살"로 죽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동성애 혐오적 다큐멘

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 아닙니다'와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이라는 개신교 목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전환치료를 옹호하였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16. 8. 11. 성명을 내고, <국민일보>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내용도 아닌 한 목사의 개인 블로그 또는 영상에 올린 발언"을 편집해 1면 톱기사로 다루었다고 비판하였다. 그간 <국민일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기 위해 혐오보도를 지속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소수자는 더욱 더 존재를 드러내 사랑과 평등을 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³⁴

1 『2016년 국민인권익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2 위의 자료, 81쪽(일반 국민)과169쪽(전문가).
 3 위의 자료, 107쪽.
 4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6.1%, 전문가의 86.7%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2005년에는 비교가능한 조사항목이 없다. 『2011년 국민인권익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참조
 5 박아란, 양정애,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Media Issue> 제2권 제7호, 2016. 7. 27.
 6 위의 자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용어 대신 '성적 기호(동성애, 양성애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7 위의 자료, 2쪽.
 8 위의 자료, 4쪽
 9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12. 387쪽.
 10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2. 397쪽.
 11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383~388쪽
 12 위의 자료, 3~4쪽
 1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는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임.
 14 『2016년 4월 심의결정현황(연예오락채널부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결정현황, 2016. 5. 10. 자.
 15 위의 자료
 16 『블락비 지코-박경 '동성키스' 콩트...심의위, "동성애 조장"』 <미디어스 >, 2016. 4. 27.자
 17 『2016년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소위원회 회의, 2016. 3. 22. 자.
 18 위의 회의록 21쪽
 19 위의 회의록 23쪽
 20 『논평-방송위의 통신심을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오픈넷, 2016. 3. 25.
 21 『해명자료 -대세는 백합』 결정사항 관련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3. 28.
 22 『Freedom on the Net 2016』, Freedom House, 2015. 11. 743쪽.
 23 위의 자료, 9쪽.
 24 <한국NGO신문>, '인터넷 자유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2016. 12. 9.자
 25 『경남CBS, 동성애 혐오론자 출연시켜 논란』 <미디어스>, 2016. 5. 4.자.
 26 『제1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발안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회의, 2016. 5. 26. 자.
 27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등, <TV 조선>, 2016. 4. 29.자.
 28 『TV조선, 성소수자 혐오를 메인뉴스에』 <미디어스>, 2016. 5. 3.자.
 29 『2016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소위원회 회의, 2016. 7. 6. 자.
 30 『양성평등과 성표현 관련 방송민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분석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8. 29.자.
 31 위의 자료
 32 『균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2016. 7. 1.자)』 『충격! 군복입은 남성을 개처럼 묶어놓고 하는 짓은?(2016. 7. 3.자)』 『관제리를 입은 남성 동성애자가 노출 사진을 올려놓고 남긴 글은?(2016. 7. 4.자)』 『게이 전용 사이트에 30초 간격으로 올라오는 글의 정체는?(2016. 7. 5.자)』 『군대 내 동성애자를 애타게 찾는 이들은 과연 누구?(2016. 7. 6.자)』 『충격! 남성 동성애자들의 집단 난교현상 사실이였다(2016. 7. 9.자)』 등
 33 <국민일보>, '죽음 앞둔 국내 첫 트랜스젠더 - 김유복씨의 증언,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2016. 8. 10.자.
 34 『성명-우리 성소수자는 더욱 더 존재를 드러내 사랑과 평등을 외칠 것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홈페이지, 2016. 8. 11. 자

19 조사/연구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진행¹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 12월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만 13세 이상 성소수자 1,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 조사는, 성소수자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및 국내 전환치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1명이었고 그 중 387명이 상담 과정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387명 중 17.6%가 '상담자가 전환치료를 시도했다', 17.3%가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할 수 있다'는 상담을 들어본 경우도 21.2%에 달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1,072명 중 16.1%가 전환치료를 권유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치료를 권유한 사람은 가족이 51.7%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지인도 30.2%를 차지했다. 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전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5%(28명)이었는데 강요에 의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환치료를 실시한 사람은 심리상담 전문가(57.1%), 종교인(46.4%), 정신과 의사(28.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 역시 전환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치료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5.4%가 해가 되었다 응답했다. 피해의 종류로는 심리적 피해(9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의 파괴, 소통단절, 아우팅' 등의 답변도 있었다.

마음연결-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한국 성인 성소수자(LGB) 건강 연구 진행

2016년 6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성소수자 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과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가 공동 수행하는 <한국 성인 성소수자(LGB) 건강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사회적 경험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성소수자의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학술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2016. 11. 11 - 12. 5. 동안 실시된 온라인 조사에는 성인 LGB(만 19세 이상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3,500여명이 참여하여, 2,430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³ 자세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학술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에서는 2017년 성인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RCP III)를 진행할 계획이다.⁴

평등,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은 201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⁵ 연구진은 17세-19세 청소년 15명과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 가정·친구관계·학교·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긴장감과 외로움, 그 속에서 커밍아웃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성소수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욕구가 드러났다.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정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소수자로서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지금처럼 청소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가 이 과정에 동참할 것을 제언했다.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성소수자가 남들과 다름없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 지금의 힘든 현실을 견딜 힘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연구진은 이 점에서 성소수자가 제도적 평등을 누리고 전반적인 인권이 향상되는 사회로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2016. 11. 28.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여성공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HIV/AIDS 감염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인 중 생존자는 10,502명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24.6%가 HIV 감염을 이유로 약속된 수술을 받지 못했고, 40.5%가 수술이나 입원 시 별도의 공간이나 기구를 이용해야 했다. 의료인에게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은 경우도 2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두려움으로 응답자의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차별은 건강문제로도 나타나 감염인의 34.0%가 우울감을, 41.7%가 자살시도를 경험했다고 대답하여 비감염인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편 의료인 57명을 대상으로 의료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주된 차별원인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IV/AIDS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5점 척도로 수치화했을 때 그 점수가 4.39점으로 조현병(3.65점), 다운증후군(3.16점)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먼저 감염인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확충, 의료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⁶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가 2016년 12월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을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 설정하고, 혐오표현 피해 및 가해 경험,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혐오에 대한 두려움과 대응 지식 등을 조사하였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정체성으로 인한 비난과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가장 크고,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 지식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295명) 가운데 84.7%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⁷ 92.6%는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비난이나 차별이 두려워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숨긴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는 74.9%,⁹ 성소수자와 관련한 혐오표현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험의 비율은 온라인에서는 94.6%, 오프라인에서는 92.2%¹⁰로 나타났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성소수자의 비율은 온라인과 관련하여서는 7.1%, 오프라인과 관련하여서는 9.8%에 불과하였다.¹¹

한편 혐오표현의 사례를 보면, 정체성을 숨기고 조용히 살라는 요구에서, 성소수자를 비정상화, 병리화하거나 소위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격리·살해·성폭력의 선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의 49.3%가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통해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을 확인하고,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금지·차별하는 형사제재 뿐만 아니라, 민사규제와 행정규제, 교육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형성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1 이하는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2016을 요약한 것이다.
2 「프로젝트 소개 - RCP I - 한국 성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건강 연구」,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 (2017.3.28 최종방문)
3 이호림, 「레인보우커넥션 프로젝트 1 결과 발표」, 『2017년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2017, 231쪽.
4 「프로젝트 소개 -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 (2017.3.28 최종방문)
5 이하는 다음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김지혜 외,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 Q로 만드는 울타리』,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 2016.
6 이하는 다음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난의 두려움: 장애인(70.5%), 이주민(52.3%), 기타여성(63.9%)
8 정체성을 이유로 한 범죄 피해의 두려움: 장애인(81.0%), 이주민(44.4%), 기타여성(87.1%)
9 온라인에서 정체성 숨김 경험: 장애인(62.0%), 이주민(32.6%), 기타여성(49.6%)
10 혐오표현 경험률: 장애인(온라인 79.5%, 오프라인 87.5%), 이주민(42.1%, 63.2%), 기타여성(83.7%, 78.4%)
11 대응방법 잘 안다: 장애인(온라인 14.5%, 오프라인 17.5%), 이주민(24.6%, 31.0%), 기타여성(7.2%, 7.7%)

20 국제인권메커니즘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직을 설립하고 초대 임무수행자로 태국의 비티 문타본 교수를 임명하였다.¹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 6. 30. 32차 회의에서 새로운 특별 절차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설립하기로 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결의안(A/HRC/RES/32/2)을 통과시켰다(찬성



23, 반대 18, 기권 6). 이는 4월부터 시작된 151개국 628개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에 힘입은 것이다. 그리고 2016년 9. 30. 유엔 인권이사회는 첫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로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국제법 교수 비티 문타본을 임명하였다. 문타본 교수는 유엔 시리아 조사 위원회 등 유엔에서 여러 인권 관련 임무를 수행한 인권 전문가다.

그러나 11월 초 아프리카 국가 그룹을 대표한 보츠와나는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인권이사회 연간 보고서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전문가 임무의 법적 근거를 문제시하며 임무 시작의 지연을 요청하는 수정안을 상정하였다.² 인권이사회가 수행한 개별 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16. 11. 4. 인권이사회 의장 최경립 주 제네바 대표부 한국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시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반대 회원국들에 의한 여러 번의 표결이 있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는 임무 이행을 위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폭력과 차별 사건에 대한 긴급청원 및 진정을 받으며,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 방문을 하고,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³ 문타본 교수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 표명

2016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⁴ 위원회는 정부가 권고 이행보다는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증진 방안,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기술할 것을 요청했고,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국가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2016. 12. 9.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⁵

이는 위원회가 2015. 12. 3. 발표한 최종견해의 제59항에서 위원회의 절차규정 제71(5)항에 근거해서 최종 견해 제15항(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항(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53항(평화적 집회)의 권고 이행에 관한 정보를 1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체제로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평등권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등은 동법 상 규정된 구제절차에 따라 차별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법 추행죄에 대해서는 동성애자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정부는 현재 개정이나 폐지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중심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정신에 따라, 정부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성교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련 사무 지침은,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 참고하는 자료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별정정 허가여부는 담당판사가 개개의 사례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며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로 잘못 인용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등 성전환의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을 시에 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 건물의 대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1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 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중앙일보>, 2016. 10. 1.자

2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활동 팽팽한 신경전」 <연합뉴스>, 2016. 11. 23.자

3 「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OHCHR (2017. 3. 23. 최종방문) <http://www.ohchr.org/EN/Issues/SexualOrientationGender/Pages/Index.aspx>

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5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 내 후속보고서」 법무부, 2017. 3. 2.자.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군대	군형법	<p>→ 1962년 제정</p> <p>→ 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2. 3.부터 시행</p> <p>→ 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 의견 반영).</p>	<p>과거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¹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함.</p> <p>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p> <p>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²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p> <p>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³</p> <p>2013년 국회의원 민홍철이 여성간 성행위까지 명시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물의를 빚고 철회</p>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p>→ 2001년 제정</p> <p>→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제2조정의 규정으로 이동</p>	<p>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p> <p>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p> <p>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p> <p>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 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수용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07년 행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 2008년부터 시행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歴),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권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116조 및 제117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행정규칙 및 대법원예규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성별정체제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	→ 2006년 대법원 결정 ⁴ 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	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과 조사사항을 규정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⁵ 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 → 2011년 대법원 결정 ⁶ 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 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하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제3조(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i)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 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ii)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제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제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제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제6조(조사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 중인지 ,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 2005년 제정	제2조 4호에 ‘성적 소수자’ 정의규정 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고 규정 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우팅 제한 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
최초로 행정규칙에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 등장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국민안전처 훈령)	→ 2007년 해양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조항의 위치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위와 동일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 준칙 (법무부훈령)	→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국민안전처훈령)	→ 2011. 9. 시행 → 해양경찰청훈령이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위와 동일하게 규정 과거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창자영창 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창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 지역·용모·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⁷ 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병역판정 신체검사서서 비뇨기과 검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를 대체 (제8조 제2항 10호 단서)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 1978. 12. 7.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 → 1999. 1.30.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의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라는 용어 등장. 이후 유지. → 2015.10.19. 일부개정 당시 ‘성주체성 장애’ 정도 판단에 있어 전반적 기능평가척도 (GAF)를 기준으로 추가	“성주체성장애·성적 선호장애 등”에 대해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3급, 4급, 5급, 7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 3급에 해당하는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는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실무적으로 동성애의 경우 성적 선호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주체성장애가 적용. ‘성적 선호장애’는 일반적인 정신질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군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 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⁸ 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6년 4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제정 → 위 <지침>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방부 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일부 수정, 격상 → 2009년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	제4편(사고예방)의 제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으로 실려 있음 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 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
보건	헌혈기록카드 (보건복지부 고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⁹ 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 항목으로 변경 → 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고시로 변경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에서는, “성접촉이라 함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
출입국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인의 처우에 관한 규칙 *→ 2015년 6월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 신설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보호 외국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방 구분으로 “화자, 임산부,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의 예외로 규정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 2012년 2월 제정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2항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 학력, 병력(病歷) 등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육	광역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2012. 1.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최초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함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
일반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아동청소년	광역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 2012. 10. 제정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 2013. 6. 제정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¹⁰ 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	--------------	---------------	--

일반	광역시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 2010. 3.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제정 → 2013. 12. 현재의 조례명으로 개정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3.12.12.> 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도민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다수인보호기관의 운영 및 관리자는 인권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4. 제정	제6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	--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 2011. 5.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	--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일반	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 2010. 12.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7.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	---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 권 증진 조례	→ 2010. 11.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	--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	----------------	--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1. 1. 제정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	--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3. 4.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	---------------------------	---------------	---

- 1 남성간 항문성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 2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 등)
- 3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참조
- 4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5 국가인권위원회 2008. 8. 25.자 06진차525외·06진차573병합 결정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요건 중 성기수술, 만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 9가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하였다.
- 6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7 국가인권위원회 2007. 7. 20.자 07진인533 결정 참조. 이 결정은 법원 결정에 의해 남성으로 성별정정한 트랜스젠더가 징병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결정문 및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징병전담의사가 하체를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사진(靚診)한 사건에 대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 8 당시 부대는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찍어올 것을 요구하였고 HIV/AIDS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한 강제체혈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6.자 06진차87 전원위원회 결정)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정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물꼬를 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듬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8, 8-12쪽을 참조
- 9 국가인권위원회 2004. 8. 3.자 03진차66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전 작성해야 하는 헌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 중 채혈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최근 1년 사이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항목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차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 이후 '여성 간의 성관계'만을 제외하였고,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여전히 헌혈금지사유로 하고 있다.
- 10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부록

1. 2016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결정례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부록 1. 2016년 주요 판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1. 판례

남성 군인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균형법상 '추행'죄(구 균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3차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인설립 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항소)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70807 판결(확정)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노1751 판결

이집트 출신 성소수자의 난민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확정)

알제리 출신 성소수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청주)2015누10729 판결(상고)

한 보수개신교 신자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퀴어퍼레이드에서의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자 2016카합337 결정

상해 사건에서 '게이 패닉'을 양형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로 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고단4225 판결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법무부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회화지도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 검사를 강제하는 건강검진제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면 제도개선 및 이에 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9. 8.자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결정

국립국제교육원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제외 사유로 HIV 감염을 포함한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1.자 16진정0306900 결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게 균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 격리조치 등을 한 데 대해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000 결정

트랜스젠더 여성이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환적출을 강요당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6. 6. 30.자 14-진정-08912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발표를 연기하여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차별행위로 진정한 사안에 대해서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6. 1. 13.자 15-진정-0764900 결정

3.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결정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시설 대관을 거절한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보호관 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 2. 15.자 14신청-95 결정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염 관리를 한 서울 보라매병원의 행위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자-1, 15신청-104(병합) 결정

부록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단체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 iSHAP ishap.or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maporainbow.net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QI 완전변태 wanbyun.org

무:대(ACETage) acetage.com

무지개인권연대 queer.or.kr

비온뒤무지개재단 rainbowfoundation.co.kr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blog.naver.com/gender_voyager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korea.org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pinks.or.kr

신나는센터 sinnaneun.org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cafe.naver.com/youthsexualright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net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NGA/SF) glocalactivism.org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org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transgender.or.kr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aidsmove.net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knpplus.org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네트워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facebook.com/IDAHOinKorea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quvkorea.tistory.com

레인보우보트 rainbowvote.org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org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facebook.com/lgbtqsos

군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gunivan.net

문화/미디어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or.kr/xe

레인보우스토어 rainbowstore.net

레인보우팩토리 cinerainbow.blog.me

레즈비언 공동체 라디오 방송 레주파 lezpa.net

생활착형비혼여성성교코스 아는언니들 [facebook.com/iknowusisters](https://www.facebook.com/iknowusisters)

서울프라이드영화제 spff.kr

여성주의사진창작기록집단 어떤사진관 [facebook.com/afilmstudio](https://www.facebook.com/afilmstudio)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chingusai.net

퀴어문화축제 kqcf.org

퀴어영화제 kqff.co.kr

햇빛서점 sunnybooks.kr

대학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KQ twitter.com/cuk_qs](https://twitter.com/cuk_qs)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twitter.com/knudamj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facebook.com/cuethefelix](https://www.facebook.com/cuethefelix)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빅(Qvik) [facebook.com/kguqvik](https://www.facebook.com/kguqvik)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Kivans twitter.com/KNUKivans](https://twitter.com/KNUKivans)

경희대학교 남성성소수자모임 [Mainstream facebook.com/khumainstream](https://www.facebook.com/khumainstream)

경희대학교 여성퀴어 모임 쿠크러쉬(KHUCrush) twitter.com/khucrush

계원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즈마 twitter.com/prismakaywon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queerkorea.org

광주과학기술원 성소수자 동아리 스펙트럼(speQtrum) twitter.com/gist_speqtrum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twitter.com/kmu_2km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비닛(QUBINET) twitter.com/qubinet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twitter.com/dkuqueer

단국대학교(천안) 성소수자 모임 [DKUeers twitter.com/D.Kueers](https://twitter.com/DKUeers)

대진대 & 차의과학대 연합 포천 성소수자모임 네버랜드 [facebook.com/neverland.queer](https://www.facebook.com/neverland.queer)

덕성여자대학교 퀴어소모임 [Be B twitter.com/dsunibeb?s=09](https://twitter.com/dsunibeb?s=09)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facebook.com/qud.dongguk](https://www.facebook.com/qud.dongguk)

동덕여대 성소수자 모임 코튼캔디 twitter.com/DDW_CC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twitter.com/diminor_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ueer In PNU\(QIP\) facebook.com/QueerInPusan](https://www.facebook.com/QueerInPusan)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facebook/sgDancingQ](https://www.facebook.com/sgDancing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큰따옴표 [facebook.com/66quoutemark99/](https://www.facebook.com/66quoutemark99/)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QIS\(큐이즈\) queerinsnu.com](http://Queer in SNU, QIS(큐이즈) queerinsnu.com)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twitter.com/kkimmeta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 facebook.com/SwuQueer0](https://www.facebook.com/SwuQueer0)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눅큐) blog.naver.com/knockontheq

세종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IRIS twitter.com/sj_queer](https://twitter.com/sj_queer)

성공회대학교 퀴어모임 [RaIn facebook.com/queerinskhu](https://www.facebook.com/queerinskhu)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QUEER HOLIC facebook.com/qhsince1398](https://www.facebook.com/qhsince1398)

성신여대 퀴어모임 [Qrystal twitter.com/qcrystal_sswu](https://twitter.com/qcrystal_sswu)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Qhoot twitter.com/smuqueer](https://twitter.com/smuqueer)

송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SSU LGBT facebook.com/SSULGBT](https://www.facebook.com/SSU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인권행동 [Queer We Are http://blog.naver.com/queerweare](http://blog.naver.com/queerweare)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facebook/yonsei.cometogether](https://www.facebook.com/yonsei.cometogether)

영남대학교 퀴어동아리 [YuniQue facebook.com/Yuni9ue](https://www.facebook.com/Yuni9ue)

울산 성소수자 모임 [THISWAY twitter.com/thisway_us](https://twitter.com/thisway_us)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http://blog.naver.com/ewhabyunnal)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twitter.com/ewhagalaxy](https://twitter.com/ewhagalaxy)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AIQU\(Association of INHA Queer\) twitter.com/queerinhacity](https://twitter.com/queerinha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twitter.com/lightsonme_](https://twitter.com/lightsonme_)

전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twitter.com/opendoor_jb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 rainbowfish.kr](http://rainbowfish.kr)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강총강총 facebook.com/rainbowincsu](https://www.facebook.com/rainbowincsu)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twitter.com/cnu_rave](https://twitter.com/cnu_rave)

[KAIST\(한국과학기술원\)](http://kaist.edu)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twitter.com/kaist_equel](https://twitter.com/kaist_equel)

[POSTECH](http://postech.ac.kr) 성소수자 모임 [링큐\(LINQ\) twitter.com/postechlinq](https://twitter.com/postechlinq)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 twitter.com/prismknu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facebook/qsadia.hufs](https://www.facebook.com/qsadia.hufs)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퀴어로스페이스 twitter.com/gaviatorkau](https://twitter.com/gaviatorkau)

한성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한우\(Hansung Rainbow\) twitter.com/hansung_hanow](https://twitter.com/hansung_hanow)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facebook.com/gobalpeople](https://www.facebook.com/gobalpeople)

한양대학교 성적소수자모임 [HYQueer facebook.com/HYQRC](https://www.facebook.com/HYQueer)

한양대학교 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facebook.com/lgbt.hyu](https://www.facebook.com/lgbt.hyu)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twitter.com/hongbansa](https://twitter.com/hongbansa)

출판/아카이브

국제인권소식 통 tongcenter.org

바이섹슈얼 웹진 bimoim.tistory.com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ive.org](http://queerarchive.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transroadmap.net](http://transroadmap.net)

퀴어인문잡지 [빠라 notein-between.com](http://notein-between.com)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facebook.com/ferm.unninetwork](https://www.facebook.com/ferm.unninetwork)

해외 LGBT 소식 블로그 Mitr mitr.tistory.com

연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blog.daum.net/lesbian2013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 rainbowconnection.kr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runtoruin.com/2059

포스트식민주어연구회 [facebook.com/pcqstudies](https://www.facebook.com/pcqstudies)

한국성소수자연구회 lgbtstudies.or.kr

LGBT상담연구회

SOGI법정책연구회 sogilaw.org

법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만드는법 hopeandlaw.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org

상담/쉼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ddingdong.kr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연구소 878878.net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chingusai.net/xo/main_connect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facebook.com/npplgbt](https://www.facebook.com/npplgbt)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21.org/go/rainbowrights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kgreens.org

종교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facebook.com/chasegiyeon](https://www.facebook.com/chasegiyeon)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facebook.com/salowee](https://www.facebook.com/salowee)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갈홍식	김유진	박진옥	유지영	이지윤	최빛나
김나영	김종균	박찬희	유체	이지윤	최석준
강한새	김주아	방근영	유현명	이지은	최영근
강현구	김지윤	백영경	윤기진	이지하	최은경
곽경민	김진아	변규홍	윤비원	이채은	최은비
권세정1	김태욱	변지은	윤정원	이하동	최지혜
권세정2	김한슬	산정	윤진	이호림	최태섭
권순부	김혁	성정숙	이규원	임수연	최혜린
그냥 사람	김혜지	손희제	이근옥	임동욱	최홍범
김경민	나종호	송주희	이궁정	임초영	케이
김내훈	남승호	시우	이나영	임하성	하희정
김누리	노민정	시타	이다현	자인	한봉석
김도영	노재호	신유정	이문영	장유진	한빛나
김미란	노정은	신지효	이상화	장호경	한서연
김민서	노지윤	신필규	이세린	전재우	한선아
김민준	류은찬	심상욱	이소정	전혜은	한우리
김보미	릭스타	심완선	이수정	정금형	한윤정
김선아	무무니	안종민	이승화	정기린	한이계영
김소유	문영민	양재용	이아름	정의성	한주희
김수현	문유진1	양진선	이연주	정해인	한지우
김수환	문유진2	양해준	이연지	정협	한현주
김순남	박동혁	양효영	이영우	정효락	허수빈
김승현	박상현	염창현	이유진	조소영	허원
김아름	박선영	오수희	이은실	조아미	홍기욱
김아인	박수영	오승재	이이사	조연후	홍승권
김영준	박예슬	울	이재엽	조제	황두영
김요셉	박이든	웅	이정연	존	황진미
김우정	박종범	원석	이종걸	청연	효진
김유빈	박지영	유글렌	이종주	초코파이	휘슬

esse	다니엘 텐들러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Isaac Gove	팀 깃즌	무지개 감신
LOVE COSME	손지후/김현영	짜뉴라디오
MECO	은영&도키	즐거운 교육상상
Masafumi Imagawa	조서연/김민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Sean	고려대 사람과사람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발행일 | 2017년 5월 17일
발행 | SOGI법정책연구회 annual.sogilaw.org
편집 | 한가람
집필 | 김지혜, 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한가람
영문판 편집 | 김지혜
영문번역 | 홍승기
디자인 | 이경민

